

연구보고서

2023

08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이승준·이승주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2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8
3. 보고서의 구성	11
II.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 논의와 쟁점	13
1. GRI 표준과 TCFD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13
2.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30
3.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기준	48
III.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61
1. EU SFDR과 CSRD의 주요내용	61
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도입안	74
IV. 지속가능 공시제도 국내 현황과 시사점	82
1.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현황	82
2.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정비 시 고려사항	85
V. 결론	93
• 참고문헌	95
• 부록	99

표 차례

〈표 I-1〉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시장 규모	4
〈표 II-1〉 TCFD 권고안에서 재무적 영향의 주요 범주	23
〈표 II-2〉 TCFD 권고안의 핵심내용	24
〈표 II-3〉 IFRS 지속가능 공시기준(초안) 체계 요약	31
〈표 II-4〉 IFRS S1 핵심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32
〈표 II-5〉 IFRS S1 핵심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33
〈표 II-6〉 IFRS S1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33
〈표 II-7〉 IFRS S1 핵심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34
〈표 II-8〉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사항	36
〈표 II-9〉 IFRS S2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41
〈표 II-10〉 IFRS S2 공시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41
〈표 II-11〉 IFRS S2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사항	42
〈표 II-12〉 IFRS S2 공시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43
〈표 II-13〉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항목	44
〈표 II-14〉 기후 관련 목표별 공시 항목	44
〈표 II-15〉 산업기반 지표 예시-보험산업	46
〈표 II-16〉 PCAF 공시 보험 관련 배출 추가 요건	50
〈표 II-17〉 금융배출과 보험관련배출의 차이 예시	51
〈표 II-18〉 보험관련 배출 포함 보험종목	52
〈표 II-19〉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의 감축 목표	56
〈표 III-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 및 규정	62
〈표 III-2〉 NFRD와 CSRD 비교	64
〈표 III-3〉 부정적인 영향(PAIs)과 관련한 18가지 의무공시 사항	65
〈표 III-4〉 SFDR 금융상품 단위 분류	66
〈표 III-5〉 ESRS2 공통공시 항목	70
〈표 III-6〉 ESRS 주제별 표준 중 환경(E) 중 기후변화(E1) 공시 사항	71
〈표 III-7〉 Regulation S-K 기후 관련 공시 Item	77
〈표 III-8〉 Regulation S-K 관련 세부 공시 사항	77
〈표 III-9〉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일정 및 인증 시점	81
〈표 IV-1〉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 연도별 자율공시 법인 수	82

〈표 IV-2〉 기업규모별 지속가능 공시 현황	83
〈표 IV-3〉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공시기준	83
〈표 IV-4〉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손해보험)	84
〈표 IV-5〉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생명보험)	85
〈표 IV-6〉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보고형태	88
〈표 IV-7〉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요구사항	89

그림 차례

〈그림 I-1〉 글로벌 이상기온 현상	2
〈그림 I-2〉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확산	5
〈그림 I-3〉 지속가능 공시의 흐름	11
〈그림 II-1〉 지속가능성의 개념	13
〈그림 II-2〉 글로벌 대기업 GRI 표준 사용 비율	14
〈그림 II-3〉 GRI 표준의 역사	15
〈그림 II-4〉 GRI 표준 모듈	19
〈그림 II-5〉 TCFD 체계: 기후 관련 위험, 기회 및 재정적 영향	22
〈그림 II-6〉 여러 공시기준의 중요성 차이	28
〈그림 II-7〉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수렴과 관련 조직의 통합	29
〈그림 II-8〉 일반 요구사항 중 ‘연계된 정보’ 공시 예시	36
〈그림 III-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타임라인	62
〈그림 III-2〉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최종안 항목	68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ulation and Insurance Industry

Living under climate crisis, we have a duty to addres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such as the 2050 net-zero goal through sustainable business and investment in order to deliver a sustainable future to the next generations. Sustainability disclosu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infrastructures that help effectively mobilize financial resources to achieve the net zero goal, in which sense, sustainability disclosure has reached to a watershed.

Traditional sustainability disclosures such as GRI Standards emphasize impact materiality. However, after 2015 Paris Agreement, firms are exposed to risks and opportunities from business operations due to the transition to net-zero economy and therefore financial materiality has emerged with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disclosure such as TCFD recommendations. ISSB's recent exposure drafts of IFRS S1 and IFRS S2 are the fruits of the efforts to converge two blocks of materiality. The issues through the public consultation of the exposure drafts includes the format and location of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 and whether and how to include scope 3 emissions. For the insurance sector, insurance-related emissions disclosure would follow the PCAF standards and NZIA target setting protocol.

Regulations on sustainability disclosure are subsequently introduced. EU is about to launch CSRD based on its own ESRS after implementing SFDR. And in the US, SEC has proposed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based on TCFD recommendations. In Korea, the issues regarding sustainability disclosure discussed during the ISSB consultation should be addressed considering local disclosure standards in refining the regulation as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is scheduled to become mandatory from 2025 for listed companies with certain size. Especially, insurance business model such as underwriting should be reflected in sustainability disclosure of the insurance sector.

요약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금융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높아지는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GRI 표준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영향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사업상 위험과 기회에 노출되면서 TCFD 권고안 등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재무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하여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초안(IFRS S1과 IFRS S2)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보험산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준으로 탄소회계금융파트너십(PCAF)의 보험 관련 배출량 보고기준과 넷제로보험연합(NZIA) 배출량 감축목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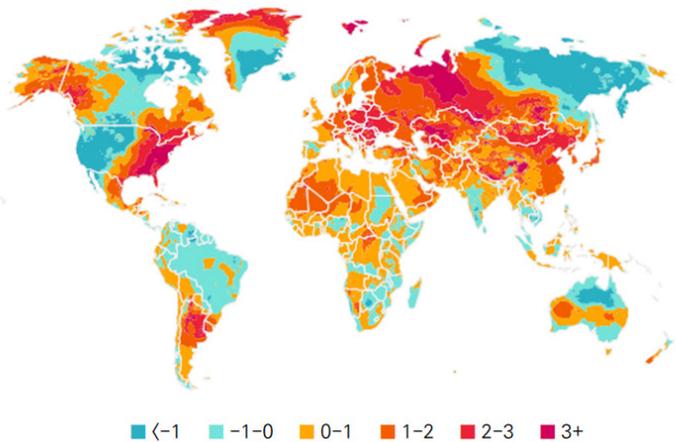
지속가능성 공시규제도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EU는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와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을 시행 중이며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준비를 위하여 중요성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 보고 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1. 연구배경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이상기온과 산불,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소식은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하여 너무도 빈번하게 전해져서 이제는 익숙해진 지 오래다. 최근 발간된 AON의 2023년 1분기 자연재해 보고서¹⁾는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과 이로 인한 가뭄과 산불 등 재앙적 상황이 남미에서 발생하였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평균 기온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고온이 관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글로벌 이상기온 현상



자료: AON(2023)

지난 3월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라 함)에서 발간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²⁾는 이 익숙해진

1) AON(2023)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이며 이는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Unequivocally) 인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차고 넘치는 과학적 증거를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였다. IPCC 보고서는 또한 파리협정의 지구 온난화 목표인 1.5°C를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5%까지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놓치게 되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 기후 현상이 보다 빈번해지고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1°C나 상승한 상태이며 우리에게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행하게도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법들은 많이 나와 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인류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 인류뿐 아니라 전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종말적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 바로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행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조달(Finance)이 필요하고 이들 재원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공시는 시장규율을 통하여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융인프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이를 위한 통일된 지속가능 공시제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원조달 필요성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이 50조 달러(6.6경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³⁾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기후금융 규모가 100~1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적어도 3~5조 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8배의 투자가 필요하다.⁴⁾ 지속가능 투자는 기존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과 수소, 바이오, 탄소 관련 기술

2) IPCC(2023)

3) World Economic Forum and Oliver Wyman(2021)

4) GFMA and BCG(2020)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주요 산업(전력, 철강, 시멘트,

(CCUS)의 혁신 등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인류가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는데 필요하지만 한정된 투자재원이 적시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지속가능 투자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에게 지속가능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만들어 시장규율을 통한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업의 유용하고 정확한 지속가능 공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커질수록 지속가능성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지속가능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속가능 공시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나. 지속가능 투자와 공시의 확산

〈표 I-1〉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2016		2018		2020		증가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6~'18	'18~'20
유럽	12,040	52.7	14,075	45.9	12,017	34.0	2,035	-2,058
미국	8,723	38.2	11,995	39.1	17,081	48.4	3,272	5,086
일본	474	2.1	2,180	7.1	2,874	8.1	1706	694
캐나다	1,086	4.8	1,699	5.5	2,423	6.9	613	724
호주·뉴질랜드	516	2.3	734	2.4	906	2.6	218	172
합계		22,839		30,683		35,301	7,844	4,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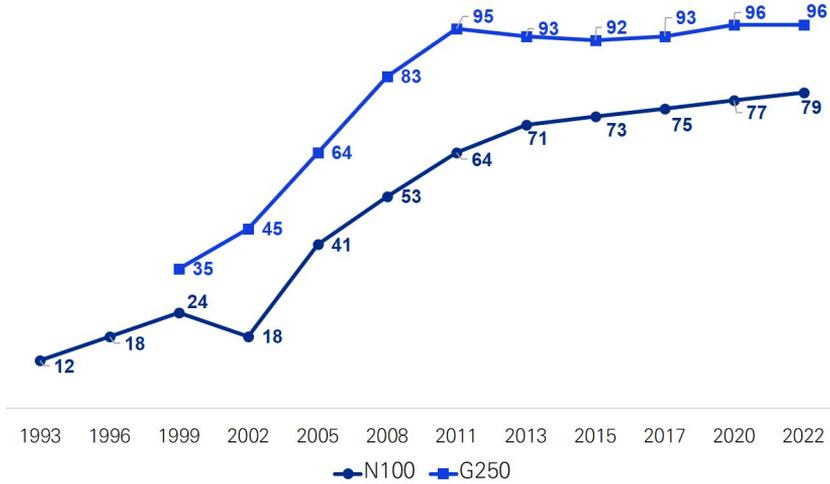
자료: GSIA(2019); GSIA(2021)

이미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투자 대상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2012년 13.3조 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ESG 투자규모는 2020년에는 35.3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표 I-1〉 참조).

화학, 교통, 운송, 항공, 해운, 농업, 건축)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융시장 및 투자 규모를 추정함

〈그림 I-2〉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확산

(단위: %)



주: N100에 해당되는 5,800개의 기업과 G250에 해당되는 250개의 기업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KPMG(2022)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들도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KPMG의 2022년 글로벌 대기업 공시현황 조사⁵⁾에 따르면 G250⁶⁾의 96%와 N100⁷⁾의 79%에서 지속가능 공시를 하며 지속가능 공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I-2〉 참조).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에는 투자자는 물론 NGO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기후 리스크와 탄소배출량(혹은 감축량)에 대한 공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TCFD 설립을 기점으로 2년 동안 N100 및 G250 절반 이상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2022년 공개율은 N100에서 71%, G250에서 80%를 각각 기록했다. 영국, 일본, 독일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최소 94% 이상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다. 대륙별로는 유럽, 미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각각 80%, 74%, 62%,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기업의 54%만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다.

5) KPMG(2022)

6) 미국 Fortune지에서 2021년 선정한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상위 250대 기업임

7) 전 세계 52개 샘플 국가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임

다. 지속가능 공시기준 논의의 진전

지속가능경영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은 GRI, UN SDGs, ISO 26000과 같은 전통적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공시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의 ESG 이슈가 부상하면서 TCFD, SASB 등이 주목받으며 사용이 증가하였다. KPMG의 2022년 글로벌 대기업 대상 공시현황⁸⁾ 조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 공시기준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표준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별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등에 의한 지속가능 공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 투자가 늘어나고 지속가능 경영과 이에 대한 공시도 확산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지속가능 공시는 투자자를 위한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기업과 같은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Impact)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이나 이니셔티브로는 GRI 표준, UN SDGs, ISO 26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관점은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외부효과이며 ‘기업활동 → 외부환경’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⁹⁾ 다른 한편으로 환경과 사회와 같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경영에 주는 위험과 기회(Risk and Opportunity)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TCFD와 SASB 등은 근래 들어 지속가능 또는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관점은 ‘외부환경 → 기업의 재무적 영향’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¹⁰⁾

통일된 지속가능 공시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지속가능 공시에서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존 재무공시와 통합하는 것이었다.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수립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이 모여 2020년 9월에 공동작업 의향서¹¹⁾를 발표하였고 이들 기구들에 대한 물리적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8) KPMG(2022)

9) Inside-Out Perspective라고도 하며, 중요성 관점에서는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이라 부름

10) Outside-In Perspective라고도 하며, 중요성 관점에서는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으로 포섭됨

11)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은 CDP,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CDSB),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IIRC),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로 2020년 9월 11일, 공동작업의향서(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를 발표하고 공통된 지속가능 공시기준과 이를 재무공시에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¹²⁾의 설립이 발표되었고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조직의 통합이 진행되었다(그림 I-3) 참조. ISSB는 2022년 3월 31일,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적인 재무정보 관련 요건을 담은 공시기준 일반 요건(IFRS S1)과 기후공시 관련 세부요건(IFRS S2)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EU에서는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ESRS)을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공시기준으로 발표하였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공시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에 기초하며 지속가능공시를 기업규제와 연결시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논의가 진전되고 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의 초안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회계기준원 내에 설립하여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을 시작하였다.¹³⁾ KSSB는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시활동을 지원하면서 국내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라. 감독당국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규제 도입 논의

기후위기의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투자 활성화가 글로벌 주요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어 이루어지던 지속가능성 의제가 국내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강제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정책 및 제도로 자리잡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인권 및 노동관행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 공시규제를 선도하는 EU는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시행에 이어 2025년부터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EU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¹⁴⁾에 기반하여

통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기로 하였음

12)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15), "ESG 공시기준 논의를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14)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분류체계,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관련 규제의 도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을 제안하였다. 2022년 3월 미국 SEC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재무공시에 포함시키는 공시 규칙 개정안¹⁵⁾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¹⁶⁾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을고려하여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¹⁷⁾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사례 및 문헌 조사와 이를 활용한 정성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외 지속가능 공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국내외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 관련 기관의 온오프라인 정보를 조사하여 진행된다.

또한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 공시기준 도입 논의와 관련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국내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시 보험산업 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401/2009 and (EU) 2018/1999 ('European Climate Law')

15) SEC(2022)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2. 28),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나. 선행연구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관련 연구와 해외 지속가능 공시제도 사례와 관련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관련 선행연구

Christensen, Hans B., Luzi Hail, and Christian Leuz(2021)는 지속가능 공시 관련 회계, 재무, 경영 및 경제 분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소개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자본시장, 이해관계자,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과정의 이슈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인형·이상호(2021)는 지속가능 보고 관련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위한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 제안하였다. 특히 국제정합성과 기존의 재무보고 체계와 연계성 면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ISSB 기준의 채택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비한 공시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최유경·정아름(2021)은 ESG 공시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동향과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ESG 공시 강화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통합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해외 지속가능공시제도 관련 선행연구

Katz, David and Laura McKintosh(2021)는 지속가능 공시기준 관련 미국 증권법 관점에서 중요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이중 중요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합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이 중요성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하고 미국 증권법상의 중요성은 합리적 투자자 가정을 통해 이미 동태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Sebastian Steuer and Tobias H. Tröger(2022)는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율의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가 기능하고 투자자본이 녹색금융으로 모이기 위한 요건을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으로 시장실패 교정

등의 효과를 위해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포함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홍철규(2022)는 유럽, 미국 그리고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의 배경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회계공시의 관점에서 기존 일반목적 재무공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각 기준 및 규정의 중요성 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접근법이 앞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제시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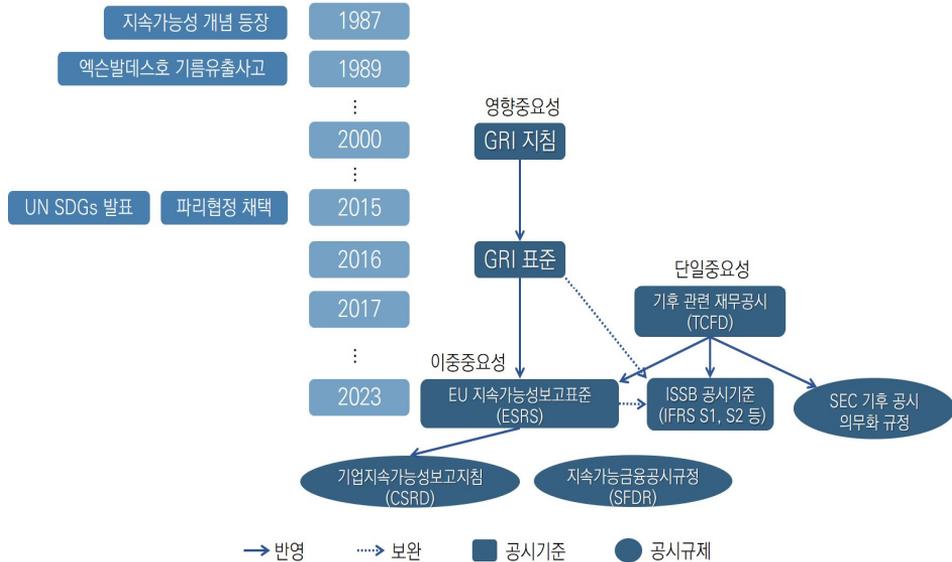
최유경·조아영(2021)은 EU의 비재무공시지침(NFRD)의 배경, 주요내용 및 EU 회원국의 지침에 따른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공시 의무화 관련 입법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지속가능 공시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신영·홍윤선(2021)도 EU의 비재무공시지침(NFRD)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적 본질과 환경 및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지속가능보고의 사업보고서 통합과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 공시 연동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수연·이태(2022)는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공시제도 현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SEC 제안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TCFD 기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 및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된 논의 내용 및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공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공시제도와 기준 관련 국제 동향을 정리하고 논의과정의 쟁점을 분석하여 공시 의무화 등 제도 정비에 필요한 보험산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3. 보고서의 구성

〈그림 I-3〉 지속가능 공시의 흐름



이 보고서의 구성은 〈그림 I-3〉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지속가능 공시의 기준을 소개한다. 먼저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과 엑슨 발데즈 오일 유출과 같은 환경사고를 거치며 대두된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기간 주요 지속가능 공시의 표준이었던 GRI 표준을 소개한 뒤,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정에서 부상한 재무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TCFD 권고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영향 중요성과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두 기준의 주요 차이점과 함께 두 공시기준에 대한 통합 논의를 설명한다.

이어 두 기준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한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와 여기서 발표한 국제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과 함께 중요성 기준,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보험산업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소개한 지속가능성 국제기준과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사항들이 EU

와 미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규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알아본다. 먼저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과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함께 지속가능금융 공시(SFDR)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IV장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 현황과 함께 향후 공시제도 정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과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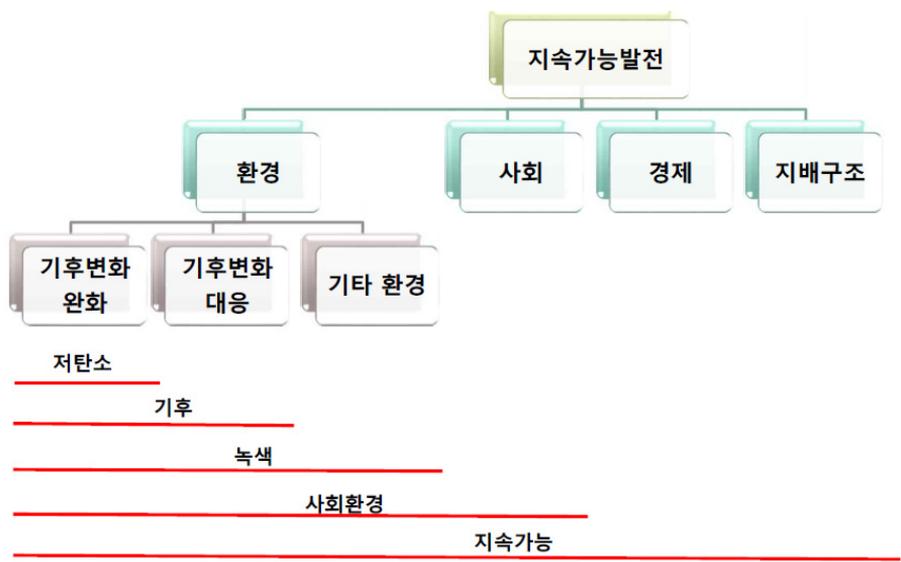
II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 논의와 쟁점

1. GRI 표준과 TCFD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가. GRI 표준

〈그림 II-1〉 지속가능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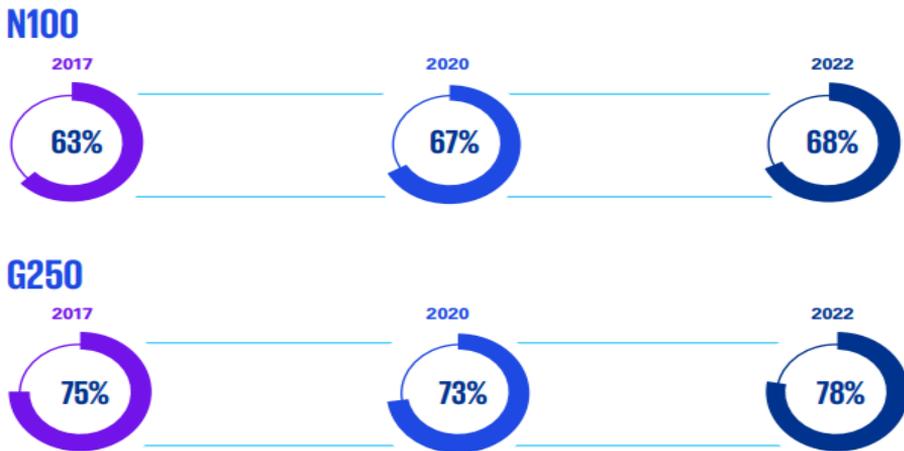
자료: UNEP(2016)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의 등장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 주도의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¹⁸⁾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진 않으면'

18) 전 노르웨이 총리, Gro Harlem Brundtland가 WCED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발간하여 Brundtland Report로도 불림

서,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¹⁹⁾을 의미한다.²⁰⁾ UN 환경계획(UNEP)은 <그림 II-1>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발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나오던 198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림 II-2> 글로벌 대기업 GRI 표준 사용 비율



주: N100은 5,800개의 국가별 100대 기업, G250는 글로벌 250 대기업임
 자료: KPMG(2022)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알려진 엑스 발데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 관련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된다.²¹⁾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GRI Standards)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기준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속가능 공시기준이다(<그림 II-2> 참조). GRI는 첫 번째 글로벌 보고기준

19)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20) 이승준(2021)

21) 역사상 최악의 환경 사고로 알려진 1989년 3월의 미국 엑스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미국 환경단체 세레즈(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 CERES)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조하는 발데즈 원칙(Valdez Principles)을 발표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UN환경계획(UNEP)과 협약을 맺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1997년 보스턴에서 GRI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GRI는 20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상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됨

인 GRI 지침(Guidelines)을 2000년 6월에 발표하였고 2002년에 G2, 2006년 G3, 2013년 G4 등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GRI 표준(GRI Standards)을 발표하는 등 GRI는 25년 이상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 제정기구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누려왔다(〈그림 II-3〉 참조). GRI는 2021년 10월 5일 개정된 공시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간되는 지속가능 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림 II-3〉 GRI 표준의 역사



자료: GRI Website

1) GRI 표준의 목적과 사용자

GRI는 GRI 표준을 사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의 목적으로 ‘조직(Organizations)²²⁾이 지속가능한 발전²³⁾에 기여하는 방법 또는 목표를 갖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 등의 조직은 GRI 표준을 사용하여 인권을 포함한 경제, 환경 및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Impact)과 함께 조직이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할 수 있다.²⁴⁾ 또한 이를

22) GRI 표준은 GRI 공시주체를 일관되게 조직(Organization)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의 성격이 기업의 지속가능공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과 기업을 함께 사용하여 기술함

23)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된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함

24) The objectiv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using the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GRI Standards) is to provide transparency on how an organization contributes or aims to contribute to

통하여 조직의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영향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높인다.

GRI 표준은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공시된 정보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GRI 표준은 이처럼 기업 등의 조직이 인권을 포함한 환경과 사회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 공시기준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해야 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을 척도로 삼게 된다. GRI 표준을 활용하는 대상도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2) GRI의 주요 개념

GRI 표준은 기업 등 조직이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기업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넓은 범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해결하거나 간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가) 영향(Impact)

GRI 표준에서 핵심적 단어라 할 수 있는 영향(Impact)이란 조직의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의 결과로 인권을 포함하여 조직이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효과를 말한다. 그 영향은 현재 나타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그 영향은 의도한 결과이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일단 나타나면 돌이킬 수 있거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RI Standards enable an organization to publicly disclose its most significant impacts on the economy, environment, and people, including impacts on their human rights and how the organization manages these impacts(밑줄은 저자가 강조를 위해 추가함)

어떤 조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경쟁 관행, 조달 관행, 세금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 육지, 물, 생태계 등 생물 및 무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토지, 물 그리고 기타 천연 자원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에게 대한 조직의 영향은 지역 사회, 취약 그룹 또는 사회와 같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조직은 고용 관행(예: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공급망(예: 공급업체 근로자의 근무 조건), 제품 및 서비스(예: 그들의 안전 또는 접근성)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GRI는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라고 정의한다. 기업과 같은 조직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로는 사업파트너, 소비자, 고객, 직원과 기타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 조직, 주주와 기타 투자자, 공급업체, 노동조합 및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된다. 여기서 이해(Stake)란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권(Human Rights)은 국제법상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특별한 가치이다.

GRI 표준의 관점에서는 조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작업자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작업의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작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업 활동에 아직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과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미래 세대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까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는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은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즉,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해야 한다. 만약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신뢰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 조직(예: 비정부 조직, 노동 조합)이 대신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외에도 조직은 특정 문제 또는 상황의 전문가(예: 학계, 비정부 조직)와 협의하고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때로는 실제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지금은 영향이 없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실사(Due Diligence)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활동이 안전 위험(Safety Hazard)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험으로 인해 다친 근로자는 실제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이고, 아직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근로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구체 조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실사(Due Diligence)

GRI 표준에서 실사(Due Diligence)란 조직이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식별, 방지, 완화 및 설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직은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해결해야 하며, 조직이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기여했다고 식별한 경우 교정을 통해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에 관여하는 방식 - 기업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지 여부 또는 영향이 사업 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 - 에 따라 조직이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또한 조직이 영향의 개선을 위해 제공하거나 협력할 책임이 있는 지 여부도 결정된다.

기업은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하거나 협력을 통하여 발생한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계에 의해 조직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비록 기업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영향을 개선하거나 협력할 책임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3) GRI 표준의 체계

〈그림 II-4〉 GRI 표준 모듈



자료: GRI Website

GRI 표준은 상호 연결된 표준들이 모듈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II-4〉 참조).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GRI 표준의 모듈은 크게 일반표준(GRI 1-3), 산업별 표준(GRI 11-13), 그리고 주제별 표준(G201-418)으로 이루어진다.

GRI 1에서 3은 일반표준으로 기업 등 지속가능 공시를 위해 GRI 표준을 사용하는 조직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과 양식을 기술한다. GRI 1은 목적, 핵심개념, 보고요건과 원칙 등 기초(Foundation)가 되는 내용을, GRI 2는 GRI 표준을 사용한 공시에 담아야 할 일반적인 공시 사항(General Disclosures)을 그리고 GRI 3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Material Topics)을 판별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GRI 뒤에 두 자리 수 번호가 오면 GRI 표준 중 산업(Sector)별 표준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별 표준으로는 3개 표준이 나와 있다. GRI 11은 석유 및 가스 산업, GRI 12는 석탄 산업, 그리고 GRI 13은 농업, 수산업, 양식업에 각각 속한 기업들이 따라야 할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담고 있다.

GRI 뒤에 201부터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가 붙으면 GRI 표준 중 주제(Topic)별 표준을 의미하며 세 자리 중 100단위 자리로 경제(200단위), 환경(300단위), 사회(400단위)별 주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GRI 305의 주제는 배출량으로 이 표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탄소, 메탄, 질소화합물 등 7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에 다른 영향을 공시한다.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 2, 3별로 GHG Protocol의 일반보고기준(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과 가치사슬보고기준(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맞추어 보고 및 공시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4) GRI 표준의 지속가능성 영향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연결성

GRI 표준을 통해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을 포함한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영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기업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운영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 재무적 성과에 결국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²⁵⁾ 예를 들어, 기업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가 확대되는 기초 속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비록 공시 시점에 재무적 중요성이 낮더라도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책 전환 등과 맞물려 결국 재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 등과 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장기적인 성공에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업이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재무 및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영향과 관련된 재무위험과 사업기회를 식별하고 재무적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다시 재무제표에서 인식해

25) 영향 중요성이 시간에 걸쳐 재무적 중요성으로 환류되는 개념을 동태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이라고 함

야 하는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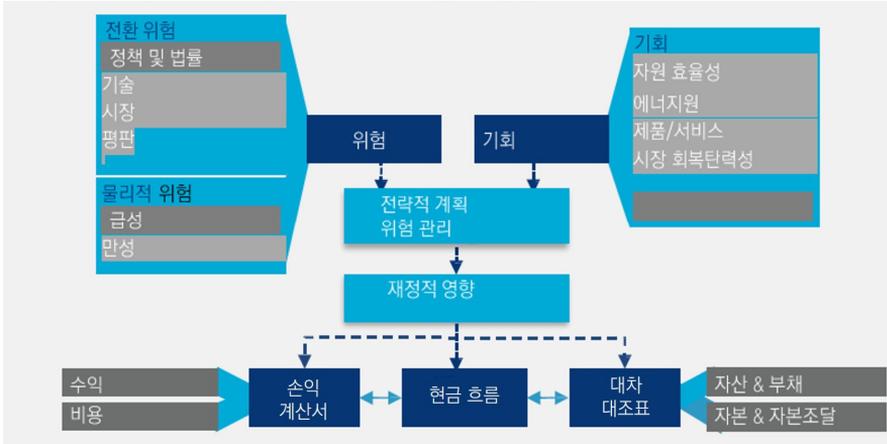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재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 공시는 그 자체가 필요한 공익 활동으로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즉,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적 의미에 대한 고려와 무관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GRI 표준을 통하여 기업이 인식하게 된 모든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공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주제는 단지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

나. 기후 관련 재무공시(TCFD)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GRI 표준과 대비되는 공시기준으로 기업 재무공시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기후 관련 재무공시 작업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라 함)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살펴본다. GRI 표준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재무공시의 관점에서는 지속가능 요소가 기업의 사업 관련 위험과 기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재무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TCFD의 재무공시 권고안은 다음 절의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기반이 되며 공시의 내용은 ISSB 지속가능 공시기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한다.

2015년 9월 회의를 마치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였고, FSB는 2015년 12월, TCFD를 조직하였다. TCFD는 은행, 보험, 자산운용, 연금 대형 비금융회사 회계 및 컨설팅 회사와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금융부문과 국가에 걸쳐서 적용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 개발과정에서 금융산업 전문가 수백 명과 인터뷰,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4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6월, TCFD 권고안의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그림 II-5) TCFD 체계: 기후 관련 위험, 기회 및 재정적 영향



자료: TCFD(2017), 공인회계사회 번역을 재인용함

TCFD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현행 증권거래 규제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의 연장선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산 소유자와 운용사가 TCFD의 권고 사항을 구현하고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불러오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Impacts)에 초점을 맞춘 재무공시를 권고하였다.

TCFD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영향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자본 및 자본조달 형태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업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즉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여 기후 관련 재무공시에 반영해야 한다(〈표 II-1〉 참조).

〈표 II-1〉 TCFD 권고안에서 재무적 영향의 주요 범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p>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및 물리적 위험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수익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익을 향상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식별함 • 특히 주어진 배출량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탄소 가격 산정의 출현 및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향을 받는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가격 책정이 비즈니스 수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p>자산 및 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기술 및 시장 역학의 변화로 인한 공급 및 수요 변화는 조직의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명이 긴 자산 및 관련 유보금의 사용은 기후 관련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자산과 부채, 특히 보유기간이 긴 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기후 관련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투자, 구조 조정, 감가 상각 또는 상각을 요구하는 현재와 약정된 미래 활동과 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함
<p>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부분적으로 조직의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비용 공급업체는 기후 관련 문제로 인한 비용 변화에 더 탄력적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유연할 수 있음 • 기업은 비용 구조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잠재력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음 • 투자자의 자본 지출 계획 및 자금 조달에 필요한 부채 또는 자본 수준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계획의 회복력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상당한 수준의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이동하는 조직의 유연성과 자본 시장의 의지임. 이러한 계획의 투명성은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 	<p>자본 및 자본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는 ① 감소된 운영 현금 흐름을 보상하기 위해 부채 수준을 늘리거나 새로운 자본 지출 또는 R&D를 통해 조직의 부채 및 자본 구조를 바꿀 수 있음, ② 새로운 부채를 늘리거나 기존 부채를 재융자하거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차입 기간을 줄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 영업 손실, 자산 상각 또는 투자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 조달 필요성으로 인해 자본 및 유보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 TCFD(2017)

이를 위하여 권고안은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를 주제로 각 주제에 대한 일반적 권고(Recommendation)와 세부내용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Recommended Disclosure)를 담고 있다(〈표 II-2〉 참조).

〈표 II-2〉 TCFD 권고안의 핵심내용

핵심요소	일반적 권고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	a)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 b)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관련 내용을 설명
경영전략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관련 내용을 설명 c) 2°C 및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
위험관리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c)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
측정 및 목표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위험 공시 c)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 설명

자료: TCFD(2017); 이승준(2021)에서 재인용함

먼저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공시한다.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경영전략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 그리고 2°C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한다. 세부적으로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 그리고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측정과 목표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한다. 세부적으로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를 하고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²⁶⁾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며,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2017년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TCFD의 권고 내용에 맞추어 공시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TCFD의 2022년 현황 보고²⁷⁾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TCFD 권고안을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70%가 재무공시에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나 연차보고서에 담았으며 이는 2017 회계연도의 4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의 기업들이 권고안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60%의 유럽 기업들이 11개의 권고내용을 모두 공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36%, 미주 지역 기업들의 29%보다 TCFD에 따른 공시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TCFD 권고안은 각 회사조직에서 이들 권고 내용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역에 공통된 지침(Guidance)과 금융권역 및 비금융권역을 위한 각각의 보충적 지침도 함께 담고 있다. 금융권역을 위한 보충적 지침은 은행(대출), 보험(위험인수), 자산관리, 자산소유(투자)로 나누어 제시되며, 비금융권역을 위한 보충적 지침은 에너지, 교통, 자재 및 건축, 농림식품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이밖에 산업에서도 해당되는 사업모형과 기후위험에 맞추어 적절한 공시가 권고된다.

26) Scope 1은 모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2는 구입한 전기, 열, 증기의 소비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3은 Scope 2 외 모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로 예를 들어 업무위탁한 회사를 통한 온스 배출임

27) TCFD(2022)

다. 지속가능 공시와 지속가능 재무공시

GRI 표준과 TCFD 권고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결국 기업과 지속가능성 상호 간 영향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방향(Inside Out 관점)의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과 지속가능성에서 기업 방향(Outside In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GRI에서는 앞서 GRI 표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향 중요성이 결국 재무적 중요성으로 환류되는 동태적 중요성 관점으로 영향 중요성의 일부는 결국 재무적 중요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 중요성 기준(단일 vs. 이중 중요성)

기업 공시는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각종 성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재무공시에는 IASB의 IFRS나 미국 FASB의 GAAP과 같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표준이 있다. 재무공시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 공시는 재무공시와는 별도로 투자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재무적 중요성 개념은 재무공시와 이를 위한 회계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을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다.²⁸⁾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보고서와 다르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중요성을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²⁹⁾

한편 미국 대법원은 어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공시되었을 경우, 투자 결정이 의미 있게 달라질 상당한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³⁰⁾ 미국 SEC에서는 ‘중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

28) 자본시장법 제47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 의무)로 대체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29)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30) TSC Industries, 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1976, Christensen et al.(2021)에서 재인용함

람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길 상당한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이 있는 내용을 중요하다고 정의한다.³¹⁾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정의의 연장선에서 지속가능 공시를 투자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위험과 기회)을 주로 공시하는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재무요소, 예를 들면 기후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결국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중요성 공시에 충실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를 TCFD는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으며,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라는 글로벌 기준으로 초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단일 중요성 공시기준을 따르는 경우, 추가적인 기업의 규제부담이나 감독자의 감독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투자자를 넘어 이해관계자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공시보다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서 재무정보와 동일한 기본 목표, 즉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미치는 영향(Impact)도 함께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공시할 지속가능 성과와 관련된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성은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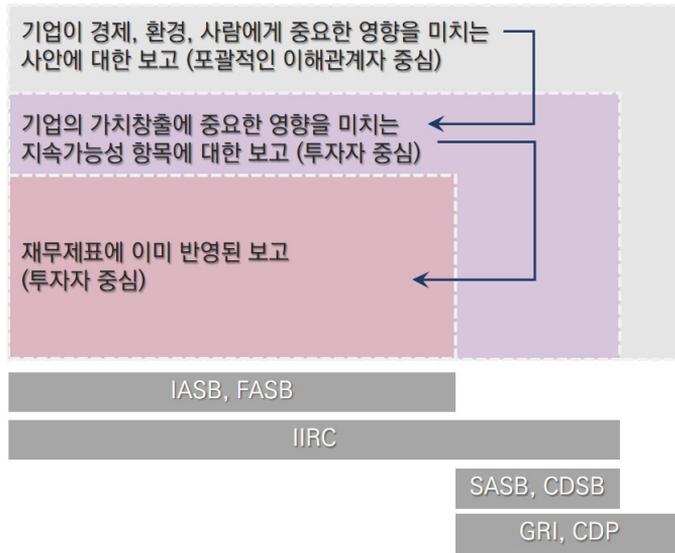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 공시가 지속가능 요소로부터 기업이 받는 위험과 기회와 함께 기업 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투자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가능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이중 중요성’을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핵심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지속가능 영향(Impact)은 시간이 지나며 재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동태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 개념으로 설명한다.³²⁾ 기업이 외부효과를 공시하도록 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까지 기업경영에 내부화하려는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1) “[a] matter is ‘material’ if there is a substantial likelihoo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consider it important.”(SEC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99 – Materiality, 1999)

32) EFRAG(2021)

2)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수렴 노력

〈그림 II-6〉 여러 공시기준의 중요성 차이



자료: CDP et al.(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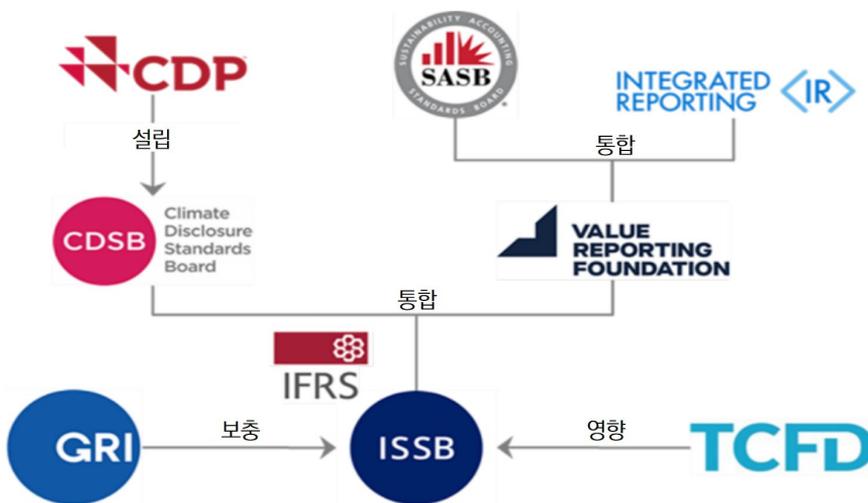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개념의 차이점을 수렴시키기 위하여 GRI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 진영과 IFRS 등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진영 간에 협력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이 모여 2020년 9월에 발표한 공동작업 의향서³³⁾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참여기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성 관련 개념의 차이는 〈그림 II-6〉이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목적도 지속가능성 및 재무공시와 관련하여 다양하다. IFRS 재단은 기업의 투명한 재무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만든 조직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미 2021년 11월 3일 COP26 기후 회의에서 ISSB의 창설이 발표되었을 때 IFRS 재단 이

33) CDP et al.(2020)

사회는 IFRS 재단,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 및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의 통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IFRS 재단은 2022년 1월 31일 CDSB를 통합하고 2022년 8월 1일에는 가치보고재단과의 통합을 완료한다. 가치보고재단은 앞선 2021년 6월 10일,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가 지속가능성 보고의 재무보고 통합을 진전시키고자 두 기관을 합병하여 만들어졌다(그림 II-7) 참조).

〈그림 II-7〉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수렴과 관련 조직의 통합



자료: Kirkland and Ellis(2022)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며, SASB 표준을 통해 기업은 비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CDSB(Climat Disclosure Standards Board)는 기후 관련 공시가 재무공시와 같은 위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만들고 조정하는 기업 및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의 국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투자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를 지향한다.

CDP는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숲을 보호하도록 이끄는 기후행동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이며 앞서 살펴본 GRI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이들은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를 지향하여 왔다.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는 규제 기관, 투자자, 회사, 표준 제정자, 회계 전문가, 학계 및 NGO의 글로벌 연합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재무공시 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 보고체계는 기업이 운영되는 상업적,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및 전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SSB는 통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설정 프로젝트 및 요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업이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계속 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기업 지배 구조 및 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지침으로 원칙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최근 ISSB는 2월 16일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초안을 확정하며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과 관련하여 IFRS에서 만든 기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IFRS S1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은 GRI 표준 또는 ESRS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표준의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IFRS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 다른 표준을 참조하는 접근 방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가.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1) 개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라 함)는 2021년 11월 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2년 3월 말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글로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3년 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ISSB의 공시 기준 체계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일반 공시 요건(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이하 'IFRS S1'이라 함)

및 '기후 관련 공시 사항(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이하 'IFRS S2'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기업이 IFRS 회계기준이 아닌 GAAP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지속가능성 보고와 공시는 IFRS S1, S2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³⁴⁾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등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IFRS S1은 모든 공시 내용에 대한 핵심 항목(Core content)을 설정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한다. 핵심 항목에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가 속하며, 기업의 공시 내용은 해당 핵심 항목을 포괄해야 한다.

IFRS S2의 목적은 보고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기후위기 및 전략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해하며 기업의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공시 항목은 IFRS S1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적이 포함된다. 동 보고의 목적과 핵심 공시 항목은 IFRS S1과 유사하나, 범위를 '기후'로 한정한다는 데에서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II-3〉 IFRS 지속가능 공시기준(초안) 체계 요약

지속가능 일반 공시기준(IFRS S1)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	
핵심 항목	일반 항목	공시 항목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기업 • 연계된 정보 • 공정한 표시 • 중요성 • 비교 정보 • 보고 빈도 • 정보의 위치 •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 오류 • 준수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공시 요건¹⁾

주: 1) 대부분 SASB 기준 차용, SASB와 다른 부분은 파악을 용이하게 위해 별도로 표시
 자료: IFRS(2022a); IFRS(2022b)

34) IFRS는 ISSB 공시기준의 주요 이용자로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대출기관을 상정하고 이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설계함

2) 일반 공시기준(IFRS S1)의 주요내용

IFRS S1은 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핵심 항목(Core contents)’과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features)’을 제시한다. IFRS S1은 보고기업이 핵심 항목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에 중점을 두고 중요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서 정보의 위치, 연계된 정보, 보고 빈도 등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준수 사항을 제시한다.

가) 핵심 항목

IFRS S1의 핵심 항목 중 ‘지배구조’에서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상의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아래 일곱 가지 공시 내용을 요구한다.

〈표 II-4〉 IFRS S1 핵심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혹은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개별 인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이사회 권한(Mandate), 기타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
	③ 의사결정기구가 해당 전략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
	④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가 해당 사항을 보고 받는 방법과 빈도
	⑤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기업 전략 및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할 때 해당 사항을 고려하는 방법
	⑥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
	⑦ 해당 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경영진의 지위 혹은 위원회에 위임되었는지 그 여부와 이들에 대한 감독방법도 포함)

자료: IFRS(2022a)

IFRS S1의 다음 핵심 항목은 '전략'으로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전략'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따른 아래 다섯 가지 공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표 II-5〉 IFRS S1 핵심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단기, 중기, 장기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기회 요소
	②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로 미치는 영향, 재무계획 수립 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
	⑤ 사업모형을 포함한 전략의 회복력(Resilience)

자료: IFRS(2022a)

이와 더불어 IFRS S1은 전략과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② 전략과 의사결정, ③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그리고 ④ 회복력 등 네 가지 요소를 나누어 세부 공시 내용을 요구한다.

〈표 II-6〉 IFRS S1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현금 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② 기업이 정의하는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 및 해당 정의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및 자본 배분 계획과의 연계성 ③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끼친 영향 혹은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④ 가치사슬 중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위치
전략 및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상황 ②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이전 보고 기간 공개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③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간 Trade-off(예: 새로운 사업장 신설 시 환경에 영향과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 간 상충관계)

〈표 II-6〉 계속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장 최근 보고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② 상기 위험 및 기회가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재무제표 상 보유자산 및 부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올 위험이 클 경우 관련 정보 ③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상태의 변동 ④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성과의 변동
회복력	①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② 기업 전략 및 현금흐름의 회복력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

자료: IFRS(2022a)

IFRS S1의 세 번째 핵심 항목인 ‘위험관리’의 공시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공시를 통해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는 해당 과정이 전체 위험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평가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과 위험관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위험관리’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따른 아래 여섯 가지 공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표 II-7〉 IFRS S1 핵심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해당 사항을 식별하는 과정
	② 해당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기회와 관련	③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
	④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과 관련	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해당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가능한 경우 포함: 위험 관련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방법, 타 유형 위험과 비교하여 동 위험 우선시 방법, 데이터 등 인풋 변수, 과거 보고 기간 대비 과정 변경 여부)
	⑥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자료: IFRS(2022a)

IFRS S1의 마지막 핵심 항목인 '지표 및 목표'의 공시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표 및 목표' 공시를 통해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는 보고기업이 세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의 진척도와 더불어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고기업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보고기업이 '지표 및 목표'에 대해 공시할 때 첫 번째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의 진척도, 그리고 해당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만약 보고기업이 직접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표를 정의하는 방법과 해당 지표가 외부기관에 검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탄소배출량 측정 등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계산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 세 번째로, 보고기업은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공시하고 네 번째로, 진척도가 측정되는 기준시점 및 목표 추진 방향과 중간 목표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사용되는 지표와 계산 방법은 일관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고기업이 지표나 목표를 다시 정의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왜 대체된 지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전의 수치와 다시 작성한 수치를 비교하여 공시해야 한다.

나) 일반 요구사항

① 보고기업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일반 요구사항'은 먼저 '보고기업'에 대해 정의한다. IFRS S1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 주체인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보고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목적 재무보고가 연결기준이라면 지속가능 보고서 또한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측정 단위로써 사용된 특정 통화가 존재한다면, 보고기업은 지속가능 재무공시에서도 해당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Material)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표 II-8〉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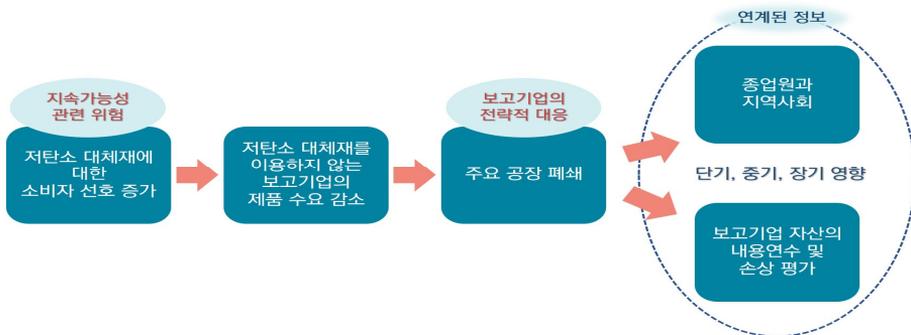
내용
① 기업 및 공급업체의 고용 관행, 판매상품의 포장재 관련 낭비량이나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건
②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희소한 수자원에 의존하는 생산 시설 등)
③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고기업 통제하의 투자(공동기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활동 자금 지원 등)
④ 자금의 원천

자료: IFRS(2022a)

② 연계된 정보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 간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위험과 기회가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정보 간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 및 목표에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보고기업이 천연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공급망 내 변화가 일어난다면, 공급망 내 변화가 어떻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변화가 생산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및 투자에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재무제표의 정보와 특정 지표 및 목표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림 II-8〉 일반 요구사항 중 '연계된 정보' 공시 예시



자료: IFRS(2022a)

③ 공정한 표시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공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며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고 적시성을 가지며 공시를 읽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 재무공시 IFRS S1과 IFRS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서(IFRS S2 등)를 함께 적용할 때 IFRS S1 공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함께 통합시키거나 서로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여 공시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보를 통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물 사용과 관련한 공시를 할 때 기업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용한 물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한 물을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④ 중요성

보고기업은 ‘중요성’에 대한 판단하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성’은 ‘특정 공시 내용을 누락 혹은 왜곡하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는 경우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혹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시정보가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상황과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IFRS S1은 보고기업이 속한 국가의 관할법과 규정으로 인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경우 보고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보고기업은 해당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비교정보

보고기업은 모든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지표에 대해 전기 보고서와의 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보고기업의 활동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한 공시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황은 보고기업이 전기에 보고한 정보와 다른 정보를 비교하여 보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은 전기에 보고한 값과 수정한 값을 기재하고 해당 값을 수정한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당기 보고서와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표나 목표에 새로운 정의를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소급하여 재작성하는데 적합한 과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다.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보고기업은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⑥ 보고 빈도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와 보고 사이의 간격은 재무제표의 간격과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의 종료시점을 변경하여 12개월보다 길거나 짧은 주기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 보고 주기가 길어진(혹은 짧아진) 이유,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기재된 모든 값이 비교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기업이 실무적인 이유로 52주의 보고 기간을 선호한다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기업이 속한 국가나 영향을 받는 규제기관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보고기업은 보고의 적시성과 비용 제약을 고려하여 전기에 보고한 정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보고에 비해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중간보고는 새로운 정보,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하지 않는다. IFRS S1 초안은 보고기업이 중간보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한다(즉, 중간보고를 금지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다).

⑦ 정보의 위치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해야 하고 각국의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³⁵⁾에 공시할 수 있다. 여기서 경영진 의견서는 경영진의 진단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운영 및 재무 검토(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 전략보고서(Strategic report) 등 다양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명확히 식별가능하며 추가 정보로 인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상호참조(Cross-reference)를 통해 별도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도 할 수 있다. 상호참조되는 정보는 동일 기간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동일 시점에 공개해야 하며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상호참조 위치 및 접근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건에 따라 기업이 공통 항목을 공시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한다.

⑧ 추정 및 불확실성의 원천

보고기업은 지표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 추정상 불확실한 공시 지표를 식별하고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Sources)과 특성,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재무정보 공시에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은 재무제표의 데이터와 가정에 가급적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IFRS S1은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즉, 보고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잠재적인 미래 사건이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시점, 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전체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35)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충하며,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의 가치창출 역량 및 현금흐름 창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⑨ 오류

보고기업은 전기에 작성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전기 공시 내용상 오류의 특성과 전기 공시 내용에 대해 가능한 수준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오류에는 계산오류, 지표 및 목표 적용 오류, 사실 간과, 해석의 오류 및 부정이 포함된다. 만약 오류 내용을 수정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오류 수정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당기에 발생한 오류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발행에 대해 승인받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만약 보고기업이 표시된 모든 과거기간의 오류가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부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비교정보를 재작성해야 한다.

⑩ 준수 문구

보고기업은 IFRS S1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해당 사실을 명시적인 요건 준수 의견서(Unqualified statement of compliance)에 포함해야 한다. IFRS S1은 만약 보고기업이 속한 현지 법규가 특정 정보의 공시를 금지한다면, 보고기업이 특정 정보를 완화하여 공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의 주요내용

IFRS S2는 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측면에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IFRS S2의 접근방식은 TCFD 권고안과 일치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가) 공시 항목

IFRS S2의 공시 항목은 IFRS S1의 핵심 항목과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IFRS S2가 S1과 다른 점은 IFRS S1은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S2는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에 집중한다.

〈표 II-9〉 IFRS S2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혹은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개별 인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이사회 권한(Mandate), 기타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
	③ 의사결정기구가 해당 전략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
	④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가 해당 사항을 보고 받는 방법과 빈도
	⑤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기업 전략 및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할 때 해당 사항을 고려하는 방법
	⑥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
	⑦ 해당 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경영진의 지위 혹은 위원회에 위임되었는지 그 여부와 이들에 대한 감독방법도 포함)

자료: IFRS(2022b)

〈표 II-10〉 IFRS S2 공시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단기, 중기, 장기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기회 요소
	②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로 미치는 영향, 재무계획 수립 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
	⑤ 사업모형을 포함한 전략의 기후 회복력(Climatic Resilience)

자료: IFRS(2022b)

〈표 II-11〉 IFRS S2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사항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현금 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② 기업이 정의하는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 및 해당 정의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및 자본 배분 계획과의 연계성 ③ 식별된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 여부
전략 및 의사결정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상황 및 기후 관련 목표 달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형 변동사항 및 예상되는 변동사항 •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법 ② 기후 관련 목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검토 절차 • 기업 가치사슬 내 배출량 감축 목표 예상 달성 수준 •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상쇄 활용 계획 ③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이전 보고 기간 공개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장 최근 보고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② 상기 위험 및 기회가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재무제표상 보유자산 및 부채에 중요한 변동을 야기할 위험이 클 경우 관련 정보 ③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상태의 변동 ④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성과의 변동 ⑤ 상기 항목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공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
기후 회복력	① 기후 회복력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관련 시사점 • 기후 회복력 분석 시 기업이 고려한 중대한 불확실성 •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후 관련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전략 및 사업모형을 변경할 수 있는 역량

자료: IFRS(2022b)

〈표 II-12〉 IFRS S2 공시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해당 사항을 식별하는 과정
	② 해당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
기후와 연관된 기회와 관련	③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시하기 위한 과정
	④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기후와 연관된 위험과 관련	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해당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가능한 경우 포함: 위험 관련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방법, 타 유형 위험과 비교하여 동 위험 우선시 방법, 데이터 등 인풋 변수, 과거 보고기간 대비 과정 변경 여부)
	⑥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자료: IFRS(2022b)

IFRS S2의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는 IFRS S1과 유사하지만, 지표 및 목표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측면을 제시한다. 보고기업은 '지표 및 목표' 부문에서 목표 달성 정도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산업 종류나 사업 모델과는 무관한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항목에 따른 정보와 더불어 공시 주제와 관련 있으면서도 보고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보고기업의 사업 모델 및 주요 사업과 공통 특성을 지닌 산업의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이 목표 달성률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와 기후 관련 위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목표 또는 기후 관련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표 II-15〉 참조).

IFRS S2 '지표 및 목표'와 관련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IFRS S1과 같이 IFRS S2의 이용자는 '지표 및 목표'를 통해 보고기업이 세운 목표의 진척도와 더불어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고기업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표 II-13〉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항목

지표	공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1.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Scope 1, 2, 3의 배출 총량(절대치)(CO ₂ -e(t)) 2. Scope 1, 2, 3별 배출량 집약도(Intensity) 3.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등에 대해 1.에서 공시한 각각의 Scope 1 및 2 배출 총량 4.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Affiliates)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5. 4.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이유가 지표 및 목표의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6. 1.에서 공시한 Scope 3 배출량의 경우: 1) 측정에 있어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배출량을 포함 2) Scope 3 배출량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배출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를 공시 3) Scope 3 배출량 측정에 가치사슬 내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기준을 설명 4) 6. 3)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기후 관련 기회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자본 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배정된 자본지출, 자본조달 또는 투자 금액
내부 탄소가격	①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가격 ②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방법
보수	① 기후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당기 인식된 경영진 보수 비율 ②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IFRS(2022b)

〈표 II-14〉 기후 관련 목표별 공시 항목

내용
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 평가에 활용된 지표 ②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사항 ③ 목표의 절대량 또는 집약도(원 단위) ④ 목적(완화, 적응, 섹터 및 과학 기반 이니셔티브 준수) ⑤ 목표의 최신 기후 관련 합의 준수 여부 및 제3자 검증 여부 ⑥ 산업별 탈탄소 접근법에 기반한 목표인지 여부 ⑦ 목표 적용 기간 ⑧ 기준 연도(진행상황이 측정되는 기준연도) ⑨ 중간 목표

자료: IFRS(2022b)

나) 부록

ISSB의 IFRS S2 부록은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누어져 있다. 파트 A에는 IFRS 지속가능 공시규제 내에서 나오는 개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파트 B는 산업별 공시 요건을 다룬다.³⁶⁾ 부록의 내용 대부분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차용하고 SASB와 다른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공시 요건을 다루기 이전에 ISSB는 산업전반(Cross-industry)에 걸친 지표 항목을 제시한다(〈표 II-13〉 참조).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모형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FRS S2는 산업별로 기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공시 주제와 관련된 지표는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은 산업에 대한 설명, 공시 주제, 지표, 세부 프로토콜, 활동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FRS S2의 관련 지표들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보고기업은 해당 기준에서 다루는 산업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모든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여러 산업군에 걸쳐 있는 경우 복수의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기반 요구사항은 SASB 기준을 토대로 산업군 분류, 공시 주제, 지표 및 테크니컬 프로토콜, 활동 지표 등 일관적으로 SASB의 기준을 따른다. SASB 기준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요구사항 하위 항목이 수정되었다는 점과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 및 촉진 배출량(Facilitated Emission)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 부문 4개 산업군에 공시 주제 및 관련 지표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중대한 위험 및 기회 식별을 위해 공시 담당자는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기업은 정량적 정보 공개를 위한 산업기반 요구사항이 산업전반 지표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해야 한다.

36) 2023년 6월 발표된 IFRS S1, S2 최종안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담은 Part A, 해당 기준 적용 지침과 IFRS S2에서 제시하는 산업기반 가이드언스를 제공하는 Part B, 최종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Part C로 나누어져 있음. 산업별 지표는 초안에 따른 '부록'이 아닌 최종안에서 'Part B'에 속함

〈표 II-15〉 산업기반 지표 예시 - 보험산업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및 지표〉

공시주제	지표	분류	측정단위
투자 관리 과정 내 ESG 통합	투자 관리 과정 및 전략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환경 책임을 장려하는 보험 상품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순 보험료	정량적	보고통화
	건강 및 안전을 장려하거나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상품(혹은 상품의 특성)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n/a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상품의 예상 최대 손실(PML)	정량적	보고통화
	사고 유형 및 지리적 분류에 따른 1. 모형 내 자연재해 및 2. 모형 외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손실 총액(재보험 순 및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환경 위험을 1. 개별 계약 인수 프로세스 및 2. 기업 수준 위험 및 자본 적정성관리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전환 위험 ¹⁾	1.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2. 모든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3. 각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보고통화, %
	금융 배출량 산식에 포함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
	자산 등급에 따라 각 산업별 지표: 1. 절대적 총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2. 총 익스포저(예: 금융 배출량)	정량적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 ₂ e), 보고통화
	자산 등급에 따라 각 산업별 지표: 1.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및 3) Scope 3 배출량의 총 배출 강도 2. 총 익스포저(예: 금융 배출량)	정량적	물리적 혹은 경제적 출력 단위당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 ₂ e)
	금융 배출량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보험산업 활동 지표〉

활동지표	분류	측정단위
상품별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건수: 1. 재산 및 상해보험, 2. 생명보험, 3. 재보험	정량적	건

주: 1) 2023년 6월 발표된 최종안 Part B에서 '전환 위험' 지표는 공시에서 제외됨
자료: IFRS(2022b)

나. ISSB 지속가능 공시 초안의 주요 쟁점사항

1)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ISSB가 사용하는 '중요성(Materiality)'의 의미는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정보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주요 이용자(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 예상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즉, IFRS S1과 S2 모두 단일 중요성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공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공시 초안 확정을 위한 지난 2월의 회의까지도 이중 중요성 관점의 GRI 표준과 유럽의 ESRS의 준용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시기준이 글로벌 지속가능 재무공시의 기준으로 정착하기까지 단일 및 이중 중요성 관점의 수렴에 보다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보고의 형태

ISSB는 보고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의 형태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표준을 제안했다. 보고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 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각국의 규정이나 감독당국의 요구사항 등)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경영진 의견서 등의 형태로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일반목적 재무보고와의 상호참조를 통한 별도의 보고서 형식으로도 작성 가능성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ISSB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양 보고서를 동시에 보고하는 것에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재무제표 발행 후 일정 기간에 한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과규정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은 Scope 3 관련 데이터 집적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ISSB는 Scope 3 공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공시의 필요성에는 이사회 전원이 동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배출량이 Scope 3에서 비롯되는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은 부분적으로 파생상품을 제외한 Scope 3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s)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Scope 3 시행일 연기와 회피조항(Safe harbor) 도입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IFRS S2 시행 이후 적어도 1년간은 Scope 3 공시를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ISSB는 Scope 3 배출량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으로 Scope 3 배출량 공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 ISSB에서 논의된 지속가능 공시 초안에 관한 보다 다양한 쟁점들은 부록과 <부록 표>를 참조 바란다.

3.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기준

현재 논의되는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이며 그중에서도 Scope 3(가치사슬) 배출 관련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공시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과 2는 반드시 공시하고 Scope 3의 경우 중요한 경우와 감축 목표를 정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시의 경우 이에 대한 목표와 진척도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치사슬에 대한 배출량인 Scope 3의 경우, 배출량의 측정 방법과 데이터의 가용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배출량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까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논의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보험인수 배출량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가. PCAF 보험 관련 배출량(Insurance Associated Emissions) 보고기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금융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공시를 논의하고자 2015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2019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다. PCAF는 특히 금융회사가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법론은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으로 파트 A-금융 배출량 표준(Financed Emissions Standard), B-촉진 배출량 표준(Facilitated Emissions Standard), C-보험 관련 배출량 표준(Insurance-Associated Emissions Standard)으로 분류된다. 파트 A 금융배출은 은행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을, 파트 B 촉진배출은 자본시장을 통한 배출량을 다룬다. ISSB 공시 초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 배출량과 촉진 배출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보험 관련 배출량도 최근 발표된 기준에 따라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과정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금융 배출량과 보험영업 과정의 보험인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동시에 노출된다. 특히 보험산업에만 해당하는 보험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은 파트 C³⁷⁾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측정법에 따라 평가하고 공시한다.

1) 보험 배출량에 추가되는 공시원칙

PCAF는 보험회사의 보험배출 보고원칙으로 GHG 프로토콜의 Scope 3 공시원칙에 추가되는 사항을 명시(〈표 II-16〉 참조)하였다. 이는 GHG 프로토콜의 Scope 3 Category 15 투자(Investment)가 금융배출 위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PCAF는 금융배출과 차별화되는 보험관련 배출 특히 보험인수와 관련된 차별성과 이를 반영하는 분리 공시를 강조하고 있다. PCAF는 이러한 차별성의 근거로 보험금은 조건부 청구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고, 금융 부문에서는 투자대상을 투자자가 선택하지만 보험인수는 피인수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한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는 고객의 경제활동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며 이는 지분이나 대출 관계로 이루어지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와 다르므로 자금

37) PCAF(2022)

조달 배출 및 보험 관련 배출 작업 흐름에 적용되는 기여 요인은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PCAF는 보험 관련 배출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GHG 프로토콜 기업가치사슬 회계 및 보고 표준의 Scope 3(투자)와 합치지 말고 분리하여 별도로 공시하도록 보고원칙에 보험배출 관련 추가 요구사항을 명기하였다.

온실가스 목록에서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은 모두 보험회사의 '다운스트림' Scope 3 배출이지만,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 계산의 산출물은 같지 않다. 따라서 금융과 보험 관련 배출량을 합치게 되면 이중 계상과 보고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반드시 분리하여 Scope 3 카테고리 15(투자)에 대한 보충적인 회계 주석으로 보고해야 한다.

〈표 II-16〉 PCAF 공시 보험 관련 배출 추가 요건

Scope 3 요소에 대한 GHG 프로토콜 원칙	보험 배출 관련 PCAF의 추가 요구사항
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코프3 요소 경계 내 모든 GHG(온실가스) 배출원인과 관련 활동에 대해 설명. 모든 특정 예외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설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는 GHG 프로토콜의 '기업가치사슬 (Scope 3) 회계와 보고 표준'에 정의된 스코프 3의 15(투자)에 따라 보험 관련 배출량을 별도 주석으로 설명 모든 한계나 제한 사항은 공시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에 걸쳐 유의미한 배출량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방법론을 이용 데이터, 방법, 시계열의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투명하게 문서화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는 '위험 추적'과 PCAF의 방법론 및 지침을 고려하여 특정 보험상품 및 특정 부문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 데이터의 가용성 및 방법론이 허용하는 경우 회피되었거나 제거된 배출량도 측정 및 보고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G 요소가 기업의 GHG 배출량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업 내·외부 사용자의 의사 결정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확인 기업 비즈니스 관계의 실질 및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요소의 경계를 설정 	배출량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에 가입된 위험과 관련한 배출량에 대해 보험회사의 뒀은 고객 또는 자산의 절대 배출량에 비례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G 배출량의 정량화를 통해 실제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그 이하를 측정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축소 사용자가 공시 정보의 무결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성을 제고 	데이터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상품 및 기본 자산 및 회사에 대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그 품질을 개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출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핵심 성과 지표(KPI)를 사용

〈표 II-16〉 계속

Scope 3 요소에 대한 GHG 프로토콜 원칙	보험 배출 관련 PCAF의 추가 요구사항
투명성 • 명확한 감사 추적을 기반으로 모든 관련 문제를 사실적이며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 • 관련된 모든 가정을 공시하고 사용한 회계 및 계산 방식과 데이터 소스를 참조	공시 • PCAF의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측정에 대한 공시는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이용하는 보험회사가 파리 기후 목표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함

자료: PCAF(2022)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의 측정은 금융의 ‘자금 추적(Follow the Money)’ 원칙이 아니라 ‘위험 추적(Follow the Risk)’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음은 금융과 보험 관련 배출량을 별도로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배출량에 대한 예시이다(〈표 II-17〉 참조).

두 계산 모두 공식은 $\sum c$ 귀속계수 $c \times$ 회사배출량 c 로 같다. 하지만 귀속계수는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기업성 보험) 계산 사이에서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금융배출량과 보험관련 배출량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관련 배출은 반드시 금융배출과 분리하여 보충적인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표 II-17〉 금융배출과 보험관련배출의 차이 예시

자금 추적(Follow the Money)	위험 추적(Follow the Risk)
1. 피보험자 A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함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함	
3.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B사에 투자함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불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함
4. 회사 B는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함	4. 피보험자 A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함
5. 보험사는 기여 요인을 적용하여 회사 B의 범위 3 범주 15 배출량에서 자금 조달된 범위 1 및 범위 2 배출량을 설명함	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의 보험 관련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해당 적립금이 보험자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여 요인을 적용하여 해당 Scope 3 범주 15 배출량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
6. 귀속요인은 자금조달 유형 및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회사가 B사의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줌	6. 귀속요인은 제공되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 정책에 따라 청구가 발생한 경우 조건부 자본(보험금 지급)의 제공이 피보험자 A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활성화 효과’를 보여줌

〈표 II-17〉 계속

시나리오(회사 A에 지분투자자 보험인수를 모두 하는 경우)

- 회사 A에 대한 지분 투자는 \$1m
- 회사 A의 EVIC(현금 포함 기업 가치)는 \$900m이고 연간 매출액은 \$300m
- 회사 A에 보험을 제공하여 보험회사가 얻은 총 보험료(GWP)는 보험 기간 동안 \$1m이며, 이 계약의 보험금 상한은 \$70m
- A사의 Scope 1, 2 총배출량은 [20,000 tCO₂e]. 현재 범위 3 배출을 보고하지 않음

금융 배출 계산	보험관련 배출 계산
$\sum \frac{\text{지분투자}}{\text{기업가치}} \times \text{회사배출량}$	$\sum \frac{\text{총보험료}}{\text{매출액}} \times \text{회사배출량}$
$\sum \frac{1,000,000}{900,000,000} \times 20,000$ = 22.22 tCO ₂ e	$\sum \frac{1,000,000}{300,000,000} \times 20,000$ = 66.67 tCO ₂ e

자료: PCAF(2022)

〈표 II-18〉 보험관련 배출 포함 보험종목

분류	보험종목(LoB)	포함 여부
기업성보험 (원수보험 및 입의 재보험)	재산(Property) 예: 화재보험, 종합보험(Multi-peril)	포함
	배상책임·상해 예: 일반배상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책임 등	포함
	영업용 자동차보험(전 종목)	포함
	해상보험(배상책임, 선박보험)	포함
	항공보험(배상책임, 기체보험)	포함
	농작물보험(정책보험 제외)	포함
	무역보증(미지급과 정치적 리스크-원수보험만 적용)	포함
	구조화 무역보증(은행대출, 모기지 등의 미상환)	불포함
	보증보험	불포함
	엔지니어링 보험 예:건축 및 설치 종합보험	불포함
	기타 엔지니어링 보험 예:기계고장, 전자부품	포함
	기업성 생명 및 연금, 개인 상해	불포함
	기타 특종보험 예: 전문직·임원 배상책임, 근재보험	포함

〈표 II-18〉 계속

분류	보험종목(LoB)	포함 여부
의무보험	-	포함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
공공기관	공공기관 보험계약 예: 중앙 및 지방 정부 보험 구매	불포함
개인보험종목	자동차(전 종목)	포함
	배상책임	불포함
	재산(Property)	불포함
	기타 개인보험종목 예: 여행자보험, 법률보험, 펫보험	불포함
	생명 및 건강보험	불포함
특약재보험 (특약과 유사한 임의재보험 포함)	전 종목	불포함

자료: PCAF(2022); NZIA(2023)

2) 보험종목과 배출량 산식

PCAF(2022)는 사용가능한 데이터 및 방법론을 고려하여 배출 관련 보고대상 보험종목으로 기업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보험종목 모두 보험 탄소배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귀속계수를 계산하여 배출량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유사하다.

기업성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회사배출량(Attribution factor×Company Emissions)으로 계산되며, 기업성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보험료를 수익(Revenue)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개인용 차량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포트폴리오 내 피보험 차량의 배출량(Attribution factor of portfolio×Emissions of insured vehicles within portfolio P)으로 계산되며, 자동차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 보험료를 차량 운영에 드는 총 비용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치사슬 중의 하나로 자동차의 운행에는 자동차 보험료 외에도 연료비, 정비료, 등록세, 감가상각, 주차료와 도로통행

료 등 다양한 운행 관련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 관련 배출량 계산을 위한 (산업) 귀속계수는 PCAF에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한 세분화된 시장의 귀속계수를 계산하여 제공하며 5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단, (산업) 귀속계수가 가용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귀속계수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PCAF에 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보험 관련 Scope 3 배출량 데이터의 한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특히 Scope 3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에서 산업이나 데이터 출처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보험 관련 Scope 3 데이터는 출처가 다양하고 이들을 수집, 처리 및 공표하는 기준도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보험회사가 고객사나 공급망 관련 Scope 3 배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고객사와 공급망의 배출량 공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관련 Scope 3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지속가능 공시에 인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각 보험종목별로 합리적으로 가용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에 걸쳐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특정 피보험자, 보험종목 또는 피보험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고품질 데이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데이터의 제약에도 보험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배출량 공시 방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정 또는 프록시 데이터라도 보험회사의 영업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가 집중된 분야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관련 경영전략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나. NZIA 보험관련 배출 목표설정 프로토콜 1.0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된 NZIA(Net Zero Insurance Alliance) 목표설정 프로토콜(NZIA Target Setting Protocol)은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관련 넷제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에 관한 첫 번째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NZIA 소속의 각 보험회사는 이

프로토콜에 따른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에 따라 도출된 방법을 사용하여 넷제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NZIA 소속 보험회사는 본 프로토콜 발표 후 6개월 이내 또는 NZIA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각각의 첫 번째 개별 목표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 설정한 개별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의 세부 사항을 매년 독립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반독점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넷제로 달성 방법을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상황에서 NZIA 회원은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NZIA는 UN 환경 계획(UNEP)의 지속가능한 보험 이니셔티브 원칙(PSI)에 따라 자발적으로 서명한 보험회사들을 말한다. NZIA 회원들은 파리협정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5°C의 온도 상승과 일치하도록 2050년까지 보험 및 재보험 인수 포트폴리오의 모든 운영 및 귀속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기 위해 약속하였다.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는 2023년 5월 현재,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등이 NZIA에 가입하였다.

UN 환경계획이 뒷받침하는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공시를 보다 투명하고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정교화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보험회사 배출량 관련 공시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NZIA 소속 보험회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목표 기간(시간 지평), 배출 온실가스 종류, 배출 보험종목, 그리고 목표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이 프로토콜에 따른 목표 기간을 설정할 때는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를 참조³⁸⁾해야 하는데 SBTi는 기업에 대한 'net-zero'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Scope 1, 2 및 3 배출을 0 또는 적격한 1.5°C 경로의 글로벌 또는 산업 수준에서 넷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것과 일치하는 잔여 수준으로 감소
2. 넷제로 목표 연도의 잔여(Residual) 배출량과 이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

38) SBTi(2023)

출량을 중화(Neutralize)

또한 과학기반목표 기업탄소중립 표준(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은 탄소중립 목표 기간 설정을 위한 4가지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단기(Near Term) 과학기반목표는 1.5°C 경로에 따라 5~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2. 장기(Long Term) 과학기반목표는 1.5°C 경로에 따라 단기 목표를 확장하여 2050년 이내에 잔여 배출량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3. 가치사슬 완화를 넘어서는(BVCM)³⁹⁾ 목표는 가치사슬 밖에 있는 다른 조직의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등을 설정
4. 중화(Neutralization) 목표는 잔류 배출량을 대기에서 제거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넷제로 상태에 도달

1) 감축 목표 유형

NZIA는 감축목표를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참여, 3. 전환 (재)보장과 같은 3가지 차별화된 목표 범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5가지 목표 유형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2. 산업별 탈탄소화 목표(SBTi 방법), 3.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목표, 4. 집중(Focused) 참여 목표, 5. 전환 (재)보장 목표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표 II-19〉 참조).

〈표 II-19〉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의 감축 목표

목표 범주	목표 유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2. 산업별 탈탄소화 목표(SBTi 방법)
참여(Engagement)	3.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목표(SBTi 방법)
	4. 집중 참여 목표
기타	5. 전환 보험 목표

자료: NZIA(2023)

39)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BVCM) 목표에 대한 과학기반목표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가) 배출량 감축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배출량 감축 목표 범주에서 두 가지 가능한 목표 유형을 제안하며, 각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 중 하나를 독립적인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유형(Overall Emissions Reduction Type)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자체의 보험 관련 배출 감축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
2.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은 개별 보험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탄소 집약도를 산업 수준에서 주어진 탈탄소화 경로로 수립시킨다.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유형은 보험회사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목표 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산업별 접근법(SDA)은 보험회사가 산업별 탈탄소화 궤적에 초점을 맞추어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나) 참여(Engagement)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참여 목표 범주에서 두 가지 가능한 목표 유형을 제안하며, 각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 중 하나를 독립적인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1.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접근법(PCA)은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체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한 고객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2. 집중 참여 목표 유형은 보험회사가 고객사의 전환 계획 및 탈탄소화 전략과 관련하여 참여한다.

두 가지 참여 대상 유형 간에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첫째, PCA는 기업고객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지만 집중 참여 대상 유형은 기업 및 개인 종목의 고객 모두에게 열려 있다. 둘째, PCA의 성공 척도는 '결과 기반'이다. 즉,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자신의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한 고객사의 수가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집중 참여 목표 유형의 경우 성공은 결과 또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노력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즉, 집중 참여 목표 유형에서 성공은 결과에 반드시 좌우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두 목표 유형 모두에서 고객사(및 해당 산업 부문)의 전환 여정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전환 과정에서 각 고객 및 산업 부문이 직면하는 특정 문제를 인식하고 맞춤형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기타 목표: 전환 보험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기타 목표' 범주 아래에 넷제로 전환의 기회 측면에서 추가적인 목표 유형을 제안한다. 보험회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후자에 기여할 수 있다. 전환 보험 목표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기후 솔루션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체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한다.

'기후 솔루션'은 다른 환경 또는 사회적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완화 또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 모두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재보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전환 보험 목표 유형은 기업성 보험종목과 개인종목으로 현재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될 수 있다.

2) 배출가스 종류 및 범위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는 모든 유형의 온실가스(GHG)⁴⁰⁾에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의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 프로토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때 모든 관련 유형의 온실가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 관련 배출(Insurance Associated Emissions; IAE), 즉 GHG 프로토콜의 기업 표준 정의에 따른 Scope 3/카테고리 15/보험인수⁴¹⁾와 관련된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자체적 운영(Scope 1, 2, 3/ 카테고리 1~14) 및 자산운용(범위 3/범주 15/투자)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배출량은 이 프로토콜의 범위를 벗어나며, 다른 관련 프로토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40) '관련 GHG'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의무화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따라 국가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7가지 가스로 간주함: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삼불화질소(NF₃)임. 이들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개인 또는 회사가 생산하는 기본 배출량을 나타냄. 모든 GHG는 일반적으로 'CO₂ 등가물(CO₂e)'로 보고함

41) 보험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은 범위 3 카테고리 15(투자)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들은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s)'과 합산되어서는 안 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Scope 1, 2 배출량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데이터가 허용하고 의미있는 경우에는 IAE 감소 목표에서 피보험자의 Scope 3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및 금융회사의 탄소배출 관련 보고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니셔티브인 PCAF 등과 같이 인정되고 일관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회계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3) 보험종목과 산출식

보험회사는 최소한 모회사나 그룹 단위에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프로토콜 버전 1.0은 보험 관련 배출(IAE) 방법론이 존재하는 보험종목(Line of Business)에 적용할 수 있다. NZIA 목표 설정 프로토콜 버전 1.0의 보험종목의 범위는 보험 관련 배출량 계산을 위해 PCAF(2022.11)에서 발표한 보험 관련 배출의 보험종목의 범위와 일치한다(〈표 II-18〉 참조).

따라서 해당되는 보험종목은 PCAF(2022)에서 설정한 대로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 중 에서 자동차보험, 그리고 기업성 보험 중 재보험은 임의재보험만 포함되며 특약재보험 및 이와 유사한 임의재보험은 제외된다. NZIA는 목표 설정을 위한 추가 보험종목을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프로토콜의 향후 버전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는 피보험 자산이나 회사의 생산요소로서 보험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성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보험료를 수익(Revenue)로 나누어준 값이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입 보험료를 차량 운영에 드는 총 비용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따라서 기업성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배출량(Attribution factor×Emissions)이고, 개인용 차량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포트폴리오 내 피보험 차량(Attribution factor of portfolio×Emissions of insured vehicles within portfolio P)이다.

4) 보고기준 연도 및 시기

보험회사는 기준 연도 및 목표 연도와 보험회사가 달성한 진척도를 보고해야 하는 날짜 등을 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NZIA에 가입한 날짜에 따라 목표를 보고 해야 하는 날짜가 달라진다.

기존 NZIA 회원은 NZIA 약정(Commitment)에 따라 첫 번째 프로토콜이 발표된 2023년

1월에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첫 목표는 5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해야 하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3가지 목표 범주에서 각 1가지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신규 NZIA 회원 요건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신규 NZIA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가지 목표 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7월 31일까지 프로토콜의 3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회원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프로토콜의 세 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서 최소 하나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국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토콜의 세 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2019년 이전으로 기준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단기 목표로 늦어도 2030년까지 목표연도를 채택하고 그 후 2035년, 2040년 및 2045년에 5년마다 중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을 목표는 발표일(즉, 기준 연도와 목표 설정일 사이의 기간)까지 이미 달성한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A는 첫 번째 단기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고 그 해에는 2035년, 2035년에는 2040년 등으로 업데이트된 목표를 발표할 수 있고, 보험회사 B는 첫 번째 단기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설정하고 그 해에는 2035년, 2035년에는 2040년 등으로 업데이트된 목표를 발표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의 향후 버전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2024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척 보고서를 통하여 각 목표 유형과 합산 관점에서 각 회사의 독립적으로 결정된 감축목표의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이는 목표가 설정된 후 최소 12개월의 실제 경험이 지난 후에만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는 공식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식채널은 연차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TCFD, 지속가능보험원칙(PSI) 공시와 CDP의 연례 설문조사 등이다. NZIA 회원사는 NZIA 사무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NZIA는 모든 회원사의 감축목표 관련 정보를 NZIA 웹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다.

Ⅲ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1. EU SFDR과 CSRD의 주요내용

가. EU의 지속가능공시 관련 제도

EU는 2014년 시행된 비재무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라 함)을 시작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만들어 왔다. EU는 2021년 3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라 함) 시행에 이어 NFRD의 내용을 개정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라 함)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1월, EU는 CSRD 이행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라 함) 최종안을 공개하였는데, 이 표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NFRD, SFDR, CSRD 등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의 입법은 '규정(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으로 이루어진다. 규정(Regulation)은 시행과 동시에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규정에 맞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지침(Directive)의 경우 회원국이 지침의 규율 대상이 됨을 뜻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침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안된다. EU 역내 활동 기업에 적용되는 NFRD, CSRD는 '지침'에 속하며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SFDR은 '규정'에 속한다.

〈표 III-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 및 규정

제도	채택	시행	적용대상	비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NFRD)	2014	2018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50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까지 적용 이후 CSRD로 대체 약 11,700개 기업에 적용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 (SFDR)	2019	2021 (Lv.1) 2023 (Lv.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Lv.1)는 참조기간 (세부 사항 없음) 2단계(Lv.2)는 세부 이행 규칙을 담은 표준에 따라 적용
기업지속 가능성 보고지침 (CSRD)	2021	2024 2025 ¹⁾ 2026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NFRD 적용기업 2025¹⁾: 직원 25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2026¹⁾: 직원 10명 이상, 순매출 70만 유로 이상, 자산 35만 유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49,700개 기업에 적용 2026년까지 (FY25) 대기기업이 적용 대상 2027년부터 (FY26) 상장 중소기업 및 캡티브 보험회사 또한 적용 대상에 포함 비상장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오픈 아웃 형식으로 공시 의무 면제

주: 1) 셋 중 두 개의 조건이 충족해야 함
 자료: Deloitte(2022), EC(2022)

〈그림 III-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타임라인



자료: ESMA(2022), Deloitte(2022)

1)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U는 2014년에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NFRD)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NFRD 시행 당시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서로 다른 보고서 간 정보를 비교하기에 쉽지 않아 정보의 활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2019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이 발표되면서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따라 NFRD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2021년 NFRD 개정안인 CSRD가 채택되었다. CSRD는 NFRD와 다른 제도가 아니라 NFRD를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CSRD의 핵심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공시 내용의 확대, 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및 접근성 제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준수 부담의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NFRD는 직원 500인 이상이면서 순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자산 총액이 2천만 유로 이상인 상장 대기업을 주요 대상이었으나, CSRD는 모든 상장 기업, 비상장 대기업, EU 역내 상장된 외국 법인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그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보고 내용 또한 NFRD의 주요 5개 주제(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인권 보호, 부패 및 뇌물 방지, 이사회 다양성 등)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 정책 시행 결과, ESG 리스크 관리 방안, 이중 중요성 공시 등 요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CSRD는 NFRD와 다르게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집중한다. 이와 더불어 EU 차원에서 CSRD 이행을 위해 유럽만의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인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제정함으로써 보고기업 간 보고서 내 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담을 차별화했다. CSRD에 따라 NFRD의 적용을 받는 상장 대기업을 2024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025년부터는 직원 250명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 2026년부터는 직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표 III-1〉 참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옵트아웃 형식으로 공시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조직 등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표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차별화하였다.

〈표 III-2〉 NFRD와 CSRD 비교

구분	NFRD	CSRD
채택	2014년	2021년
시행	2018~2023년	2024년(2026년까지 적용기업 확대)
적용 기업 수	약 11,700개 기업	약 49,000개 기업
보고요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 인권 보호 • 부패 및 뇌물 방지 • 이사회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RD의 보고요건 범위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 중요성) • ESG 장기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 사회, 인간,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TCFD에 따른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 SFDR 및 EU 택소노미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3자 검증 여부	3자 검증 의무 불필요	3자 검증 필요
보고 위치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은 연간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 내	연간 경영보고서 내
포맷	온라인 PDF 파일	전자 포맷(XHTML)

자료: Deloitte(2023)

2)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CSRD는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라면, SFDR은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EU의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EU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민간 자본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SFDR 제정을 추진했다. EU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SFDR의 핵심이다. SFDR은 2021년 3월 1단계(Level 1) 시행 후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을 거쳐 2023년 세부 기술 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이하 ‘RTS’라 함)을 담은 2단계(Level 2)가 시행되었다. 이행 1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이행 2단계가 시행된 2023년부터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고, 금융회사는 RTS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SFDR의 체계는 금융회사 단위(Entity-level)와 금융상품 단위(Product-level)의 공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단위' 공시 사항에 따라 정량적 공시와 정성적 공시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먼저 금융회사는 자사의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이하 'PAIs'라 함)을 미치는 18개의 지표를 담아 정량적 공시를 해야 한다(〈표 III-3〉 참조).

〈표 III-3〉 부정적인 영향(PAIs)과 관련한 18가지 의무공시 사항

투자 대상	지표 분류	적용 지표
기업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발자국 • 투자 대상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 화석연료 부문 익스포저 • 재생 불가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 고영향 기후부문별 에너지 소비 강도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 민감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물	오염수 방출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핵폐기물 비율
	사회 및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규정 메커니즘 부재 •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에 대한 익스포저(대인지뢰, 화학무기 등)
국가	환경	피투자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사회	사회적 위반 국가
부동산자산	화석연료	부동산자산을 통한 화석연료(추출, 저장, 운송 및 제조 관련) 익스포저
	에너지효율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동산자산 익스포저

자료: EC(2022)

회사 단위의 정성적 내용 또한 공시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는 PAIs를 식별하는 방식과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보고기업의 조치,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공급망 실사에 대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시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보고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 강령 및 표준 참조 사항 등을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단위’ 공시 사항에 따라 EU 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들 카테고리는 지속가능성은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SFDR 제8조(라이트 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제9조(다크 그린), 8조 및 9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제6조로 분류된다. 보고기업은 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시하되, 8조 및 9조 펀드 투자자에게는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표 III-4〉 참조).

〈표 III-4〉 SFDR 금융상품 단위 분류

구분	특징	공시 내용
제6조	제8조,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이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를 통합하는 방식 • 위의 방식이 동 상품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제8조 (라이트그린)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품이 환경 또는 사회적 특성이나 양 특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법
제9조 (다크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품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 공시에 사용한 지수가 참조 벤치마크로 지정되어있는지 그 여부

자료: 심수연(202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SFDR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지침 문서를 발간하였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SFDR 2단계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우선 보고기업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담은 PAIs 지표가 매우 광범위하여 적절한 투자 방식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CSRD 등)에서 요구하는 지표와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석하는 방식과 해당 영향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분류체계 등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을 식별하고 규정 준수 사항을 일치시켜야 하는 부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SFDR을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이 부족하여 기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속가능성 규제 환경에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주로 비재무정보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의 품질과 가용성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한다.

나.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주요 내용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라 함)은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한 회계기준 자문기구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EFRAG 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인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이하 'SRB'라 함)를 설치하여 유럽에 적용되는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라 함)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EFRAG는 2022년 4월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최종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23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SRS 최종안을 위임 법률(Delegated Act)로 채택하여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표준은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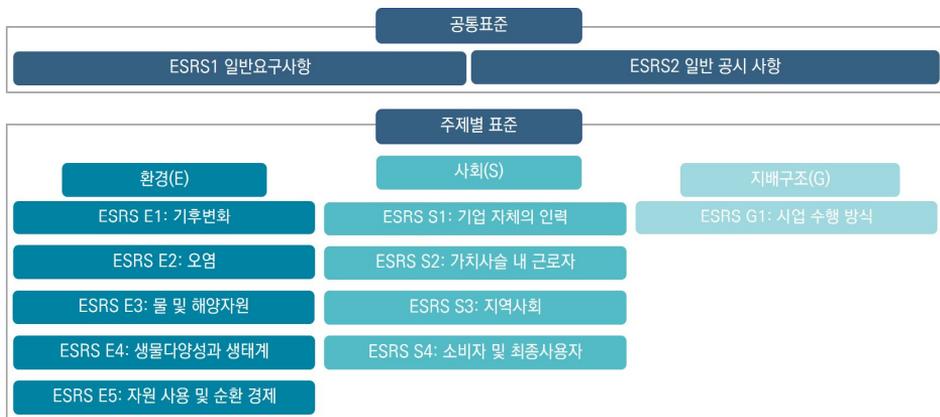
ESRS는 기존 EU 법령과 TCFD, ISSB, GRI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표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공시 표준이다. ESRS는 2개의 공통 표준(Cross-cutting standards)을 제시하고 주제별 표준으로 5개의 환경(E) 기준, 4개의 사회(S) 기준, 1개의 지배구조(G) 기준으로 이루어져 총 10개의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I-2〉 참조).

유럽 그린딜의 일부인 CSRD에 따라 EU 역내 기업은 ESRS의 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있다. 즉, ESRS는 역내 기업이 CSRD를 따르기 위한 이행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고기업은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의 별도의 섹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제 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SRS가 ISSB와 SEC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규제안과 가장 다른 점은 이중 중요성(Double

42) ESRS는 CSRD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시 표준'으로, CSRD의 시행 시기, 적용 기업에 맞추어 시행됨

Materiality)의 개념을 차용하고 보고기업에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이에 대한 사안은 '다.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의 주요 쟁점 사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림 III-2〉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최종안 항목



자료: EY(2022)

보고기업은 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Material)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보고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산업(Sector-agnostic) 공시, 보고기업이 속한 소속 산업(Sector-specific) 공시, 그리고 보고기업이 고유하게 지닌 기업단위(Entity-specific) 공시로 분류된다. 주제별 표준에 속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기준은 전체산업 기준이며, EFRAG는 향후 소속 산업 기준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1) 공통표준(Cross-cutting standards)

ESRS1은 일반 원칙(General Requirements), ESRS2는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SRS1은 보고기업이 ESRS 체계에 따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는데, 이중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는 ESRS는 '이해관계자'의 의미를 투자자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고기업은 기업의 행위나 가치사슬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용자'를 식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ERS1은 ERS의 목적과 범위,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원칙,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활동에 대한 공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지속가능 공시의 시계열(Time Horizon) 등 전체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ERS2는 보고기업이 주제별 표준(E1-E5, S1-S4 및 G1)을 공시할 때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항목(① 공시 준비 기본 사항, ② 거버넌스, ③ 전략, ④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⑤ 지표 및 목표)을 제시하여 TCFD 권고안에 기초하면서도 보다 세분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보고기업은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업 개요, 가치사슬과 범위에 대한 근삿값, 추정의 불확실성, 공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발생한 변경 사항 그리고 이전 기간의 오류와 같은 특정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RS2는 ERS 공통표준(Cross-cutting Standards) 및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이 제시하는 공시 항목이 어떤 EU 법규(SFDR, EU 기후법 등)와 연결되어 있는지 표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공시기준을 세운 근거를 보여준다(ERS2 Appendix C). 또한 ERS2에서 요구하는 각 공시 요구사항이 실무적으로 주제별 표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원칙을 통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ERS2 Appendix D).

2)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

주제별 표준은 전체산업(Sector-agnostic)에 적용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관련된 공시 사항을 제시한다. 주제별 표준의 목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고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한 중요한 위험과 기회, 마지막으로 보고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주제별 표준에서 보고기업은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관련 정책, 목표, 대책과 자원을 포함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안, 주제별 표준과 관련된 지표와 목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표 III-5〉 ERS2 공통공시 항목

공통공시 항목	상세 내용		코드
공시준비를 위한 기본 사항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준비를 위한 일반 사항		BP-1
	특정 상황과 연관된 공시		BP-2
거버넌스	기업 행정, 관리 및 감독 부서의 역할		GOV-1
	기업 행정, 관리 및 감독 부서가 수취한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 문제 해결 방안		GOV-2
	기업 인센티브 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		GOV-3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정보		GOV-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GOV-5
전략	마켓포지션,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SBM-1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견해		SBM-2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이들과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사이의 상호 작용		SBM-3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중요성 평가 과정 공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그리고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IRO-1
		ESRS 공시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IRO-2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공시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	DC-P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	DC-A
지표 및 목표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지표		DC-M
	목표를 통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		DC-T

자료: EFRAG(2022c)

주제별 표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개의 환경(E) 기준, 4개의 사회(S) 기준, 1개의 지배구조(G)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10개의 ESG 주제별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 부문은 E1 기후변화, E2 오염, E3 수자원 및 해양 자원, E4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그리고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에 대한 기업의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사회 부문은 S1 기업 자체의 인력,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S3 지역사회, 그리고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기업의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지배구조 부문은 G1 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표 III-6〉 ESRS 주제별 표준 중 환경(E) 중 기후변화(E1) 공시 사항

주제	공시 항목		상세 내용	코드
기후 변화 (E1)	ESRS 2 일반 요구사항		GOV(거버넌스), SBM(전략), IRO(영향, 위기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정보	-
	공시 요구사항	지배구조	ESRS G2 GOV-3 관련 인센티브 제도 내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	-
		전략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E1-1
			ESRS 2 SBM-3과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이들과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사이의 상호 작용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ESRS 2 IRO-1 중요한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	
	영향, 위기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		E1-2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		E1-3
	지표 및 목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목표 (ESRS2 GOV-3)		E1-4
		에너지 소비 및 혼합		E1-5
	당기순이익 기준 에너지 집약도	총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E1-6
	순매출기준 온실가스 집약도	탄소배출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온실가스 제거 및 완화 프로젝트		E1-7
		내부 탄소 가격		E1-8
		잠재적인 기후 관련 기회와 전환 및 물리적 위험이 잠재적으로 재정 요소에 미치는 영향		E1-9

자료: EFRAG(2022d)

이중 대표적인 환경 공시 부문에서 다른 지속가능 공시기준 및 규제(IFRS S2, SEC 기후 관련 공시 규정 등)에서도 공통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E1) 부문은 ESRS2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 필수 항목(① 공시 준비 기본 사항, ② 거버넌스, ③ 전략, ④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⑤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Scope 1, 2, 3 공시 내용을 담고 있는 당기순이익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순 매출 기준 온실 가스 집약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기후변화(E1)에 대한 자세한 공시 사항은 〈표 III-6〉과 같다.

다.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주요 쟁점 사항

1)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중 중요성

ESRS의 핵심가치인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은 지속가능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Outside-In) 관점에서의 재무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만을 다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Inside-Out) 관점에서의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까지 고려한다. 즉,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이용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보고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ESRS의 이중 중요성은 양 중요성(재무, 영향)의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인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기업은 재무 중요성을 가진 정보와 영향 중요성을 가진 정보뿐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중요성을 가진 정보 또한 공시해야 한다.

재무 중요성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중요한(Material) 정보로 식별된다. 해당 위험과 기회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에 기인하여,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거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위험과 기회의 특성이 '자산'의 회계학적 정의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비즈니스 가치 창출 활동과도 연관돼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고기업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영향 중요성에서 보고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람과 지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Material) 정보로 식별된다. 이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가치사슬과 연결된 영향까지도 포함된다.

가치사슬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고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혹은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영향 중요성의 핵심이다. 즉,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 해당하는 Scope 2와 Scope 3 배출량도 보고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코발트를 가치사슬 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겠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만약 가치사슬 내 기업이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

에서 아동을 노동자로서 착취했다면, 이는 보고기업이 인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e.g. 아동 노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가치사슬 내 기업이 보고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보고기업의 가치사슬과 연관은 없는 경우 해당 파트너의 온실가스 배출은 보고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며, 따라서 보고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관된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2) 보고의 형태

CSRD가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SRS 1에 따라 EU 역내 보고기업은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아닌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의 일부로서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라는 제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상호 연결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두 가지 정보를 한 곳에 담아 보고기업의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국 감독당국은 보고기업이 CSRD를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원활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ESRS와 다른 공시규제와의 차이점은 Scope 3 공시 관련 요구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ISSB의 IFRS S2, SEC의 기후공시 규칙안은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ESRS는 Scope 1, 2, 3 모두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⁴³⁾

다른 공시기준이나 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ISSB의 IFRS S2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이전에는 온실가스 집약도에 대한 공시 내용을 포함했으나 글로벌 의견수렴을 통해 온실가스 집약도 공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SRS는 온실가스 집약도와 관련된 공시를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EU는 Scope 3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전환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역내 보고기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Scope 3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ESRS와 달리 ISSB는 Scope 3 공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의 제약 등 현실적인

43) ISSB 또한 Scope 3 배출량을 의무화하였지만 제도 시행 후 1년간 Scope 3는 공시 의무에서 예외됨

이유를 들어 IFRS S2 의견수렴 과정에서 Scope 3 시행일을 연기하였다. IFRS S2,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집약도와 Scope 3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ESRS E1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시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도입안

가. SEC 규칙안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2022년 3월, 기후 관련 리스크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상장기업의 공시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후 관련 사건(물리적 리스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같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전환 리스크)이 있는 필수 정보를 기존 재무공시의 연장선에서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다. SEC는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2023년 4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안 발표는 현재 지연되고 있다.

나. SEC 규칙안의 세부 내용

1) Regulation S-K 및 Regulation S-X 내 규칙 신설을 통한 기후공시

SEC의 규칙안은 TCFD 권고안에 기반한다. 이는 많은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이 TCFD 권고안의 내용을 채택하고 있어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비교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SEC는 규칙안에서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인 Regulation S-K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장(Subpart 1500: Climate-Related Disclosure)을 신설했다. SEC 규칙안은 TCFD 권고안과 유사하게 Regulation S-K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또한 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잠정적으로 손익계산서 중심의 재무성과와 대차대조표 중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EC의 규칙안은 재무정보 공시 규칙인 Regulation S-X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조항(Article 14: Climate-Related Disclosure)을 추가하여 기후변화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의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주석 공시의 범주는 재무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 추정 및 가정 지표(Financial Estimation and Assumptions)로 나누어진다.

2) Regulation S-K 개정을 통한 기후 관련 공시 사항

SEC는 Regulation S-K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으며, 해당되는 항목은 1500부터 1506이다. TCFD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사안(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을 다루고 있는 항목은 1501부터 1504이며, 1505부터 1506은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사항과 기후와 관련된 목표 공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항목 1501은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항목 1501에 따라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이사회 감독과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2는 보고기업의 비즈니스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고기업은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후 관련 위험이 물리적 위험(급성, 만성 등)인지 전환 위험(규제, 기술, 시장, 평판 등)인지 식별하고 위험의 특성과 위험이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의 공시의 한 예시로 보고기업의 건물이나 공장이 풍수해 위험 지역에 위치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보고기업은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비즈니스 유형, 가치사슬 내 기업, 기후 관련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조치에 대해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3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기 위해 보고기업이 따르는 절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할 때 다른 성질의 위험과

비교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같이 기후와 관련된 규제 요건이나 정책을 고려하는 방법과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때 기술 변화나 시장 가격의 변화 측면에서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고기업은 특정 기후 위험에 대한 완화 및 적응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업은 위에서 공시한 프로세스가 전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4는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공시 방법에 대해 다룬다. 항목 1504에 따라 보고기업은 Scope 1, 2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해당 사항을 공시할 때, 조직(Organizational)과 운영(Operational) 경계를 설정하여 Scope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이산화탄소 환산톤(CO₂e)으로 측정한 배출량의 총합을 공시해야 한다.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보고기업이 Scope 3 배출량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다면 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cope 3 배출량 공시 기업은 배출량 산출에 포함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의 범위를 식별하고 Scope 3 배출량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 보고기업은 이에 대해 공시하고 대체 데이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누락 사항을 해결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항목 1505는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에 대해 다루는데, 이는 본보고서의 '다. SEC 규칙안의 주요 쟁점 사항' 중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에 상세히 설명한다.

항목 1506은 기후 관련 목표 공시 사항으로 보고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 관련 목표를 세운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배출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측정 단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타임라인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목표 달성 진척도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표 III-7〉 Regulation S-K 기후 관련 공시 Item

Item	항목	주요 내용
1501	지배구조	기후 위험과 관련한 이사회 감독 기능과 이를 관리 및 평가하는 경영진의 역할 공시
1502	전략, 사업 모델, 전망	기후 위험이 기업의 전략, 사업 모델, 전망 및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중기, 장기 영향 공시
1503	위험 관리	기후 위험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절차와 해당 프로세스가 기업 위험 관리 시스템 내 통합 여부 공시
1504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Scope 1, 2 배출량,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 및 금융 배출량 공시
1505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인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1506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배출량 유형, 측정 단위, 목표 달성 기간, 중간 목표, 달성 전략 등 포함) 공시

자료: SEC(2022)

〈표 III-8〉 Regulation S-K 관련 세부 공시 사항

항목	주요 내용
지배구조 (1501)	이사회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② 기후 관련 위험을 논의하는 절차 및 빈도 ③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재무 감독의 일부로 고려하는지 여부 ④ 이사회가 기후 관련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방법
	경영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책임 여부 및 직위 또는 전문성 ② 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하는 절차 ③ 경영진이 이사회나 관련 위원회에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하여 보고하는지 여부 및 빈도
전략, 사업 모델, 전망 (1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 유형 및 운영 위치 등 ② 제품 또는 서비스 ③ 가치사슬의 공급자 및 기타 참여자 ④ 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행위 ⑤ 연구개발 관련 지출 ⑥ 기타 중요한 변경 또는 영향

〈표 III-8〉 계속

항목	주요 내용	
위험 관리 (1503)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도록 요구 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기후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 ②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할 때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같은 규제 요건이나 정책을 고려하는 방법 ③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때 고객의 선호도 변화, 기술 변화 또는 시장가격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 ④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 규모와 범위의 평가 방법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공시 ① 특정 위험을 완화, 수용 또는 적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② 기후 관련 위험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 ③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1504)	Scope 1, 2	① 온실가스 구성요소 별 배출량 ② 이산화탄소환산톤(CO ₂ e)로 측정된 배출량 총합
	기술적 사항 및 금융 배출량	① 배출량 측정과 관련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배출 계수, 주요 가정, 외부데이터 제공업자, 데이터 갭 등)

자료: 홍지연(2022)

3) Regulation S-X 개정을 통한 재무제표 주석 형식으로서의 공시

SEC는 Regulation S-X를 개정하여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조항(Article 14)를 기후 위험에서 비롯된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의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동 규칙안이 요구하는 주석 공시는 재무 영향 지표, 지출 지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이다.

재무 영향 지표는 심각한 기상이변 및 자연환경 변화와 같은 물리적 위험과 기업의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Line item)에 미치는 양적 영향을 의미한다. 이때 보고기업은 양적 영향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각각의 총액을 공시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예로는 기상 악화로 인한 기업 휴지 발생이나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 자산(재고, 유·무형자산 등)가치의 변동, 준비금의 변화나 예상 보험 손실 총액의 변화 등이 있다. 전환 위험에 대한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 매출 계약 해지 발생과 이로 인한 매출 및 비용의 변화나 특정한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있다. 공시 대상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의 절댓값의 합이 관련 재무제표 항목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영향의 절댓값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공시할 필요는 없다.

지출 지표와 관련하여 보고기업은 기후 위험의 물리적 위험이나 전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회계 연도 동안 발생한 지출 및 자본화 비용의 총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준은 재무영향 지표와 동일하게 지출 금액의 합계액이나 자본화 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전체 지출 항목 또는 전체 자본화 항목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영향의 절댓값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공시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고기업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용된 추정과 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공시해야 한다.

다. SEC 규칙안의 주요 쟁점 사항

1)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은 기존 재무공시의 연장선에서 지속가능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관점을 가진다. SEC 위원회와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해 같은 선상에서 해석한다. 즉,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나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은 ‘중요(Material)’하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투자자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로 간주된다.

2) 보고의 형태

규칙안이 발표된 뒤 Regulation S-K나 S-X 외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독립적인 규정 채택을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SEC는 해당 규정이 투자자가 보고기업의 비즈니스 특징과 미래 전망, 재무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항이므로 기존 재무공시 규정과 같은 선상에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고기업은 보고 위치와 관련하여 연례보고서 내 위험요인(Risk Factors) 또는 경영진의 의견 및 분석을 담은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 등의 형태로 증권신고서나 연례보고서의 한 부분 또는 주석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통합시킬 수 있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가) Scope 3 공시 사항

SEC의 규칙안은 Scope 3 배출량 산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근거 또는 신의에 따라 공시할 경우 허위나 오류가 있더라도 '사기 진술(Fraudulent statement)'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안전 조항을 마련했다.⁴⁴⁾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Scope 3 배출량이 중요(Material)하거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Scope 3를 포함한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는 경우 배출량 총합 및 구성 요소별 배출량과 함께 배출량 산출에 포함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공급망 활동의 배출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공급망 활동의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SEC 규칙안은 보고기업이 과거에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던 특정 공정을 외주화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요성(Materiality)' 결정 시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감안하고 공시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나)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가정은 외부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존적이므로 보고기업은 배출량 공시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⁴⁵⁾

그러나 SEC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44) 정신통(2022)

45) 정신통(2022)

보고 의무를 조기 제출 기업으로 한정하고 Scope 3를 제외한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서만 해당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 2년 동안 ‘제한된 인증’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합리적 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제한된 인증’은 Scope 1, 2 배출량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Conclusion)’을 내려주는 일반적인 인증 수준을 의미하며, ‘합리적 인증’은 동 공시가 중대한 오류 없이 규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의견(Opinion)’을 제공하는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요구되는 인증 수준이다.

〈표 III-9〉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일정 및 인증 시점

구분	공시 일정		Scope 1, 2 공시 인증 시점	
	Scope 1, 2	Scope 3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FY 2023 (2024년 제출)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6 (2027년 제출)
상장 중견기업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FY 2027 (2028년 제출)
상장 소기업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면제	면제
소규모 보고기업	FY 2025 (2026년 제출)	면제	면제	면제

자료: Cadwalader, Wickersham & Taft(2022)

IV

지속가능 공시제도 국내 현황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현황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시는 현재 자율공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의무화되며 2030년 전 상장회사로 의무공시가 확대될 예정이다.⁴⁶⁾ 또한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 올해 2분기 말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제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IV-1〉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 연도별 자율공시 법인 수

(단위: 개 사,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1년 12월
자율공시 법인 수	8	14	20	38	78	128
증가(증가율)	-	6(75)	6(75)	18(90)	40(105)	50(64)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 12. 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과 더불어 지속가능 공시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속가능 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8개에 머물던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는 이후 자율공시임에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1년 말에는 128개 회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 참조). 그리고 자율공시 기업 중에서는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2〉 참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공시한 35개 회사를

4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은 대부분 GRI 표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SASB, TCFD, UN 지속가능발전(SDG) 등의 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3〉 참조).

〈표 IV-2〉 기업규모별 지속가능 공시 현황

(단위: 개 사, %)

자산(연결 2021년 12월 말 기준)	2021년	2022년(기업 수)	2022년(비중)
대규모 법인	100조 원 이상	11	9
	10~100조 원	28	35
	2~10조 원	28	44
2조 원 이상	67	113	88
2조 원 미만	11	15	12
총 합계	78	128	100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 12. 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표 IV-3〉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공시기준

(단위: 개 사, %)

구분	GRI	SASB	TCFD	UN SDGs	UN GC	기타
기업 수	35	32	27	22	19	9
비중	100	91	77	63	54	26

주: UN SDG=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 GC=UN 글로벌 컴팩트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2.12.2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분석결과 및 모범사례 발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은 아직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지속가능 보고서가 독립적으로 또는 재무보고서와 통합보고서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표 IV-4〉 및 〈표 IV-5〉 참조). 작성기준은 2020년 이전까지 GRI 표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GRI 표준과 함께 SASB와 TCFD를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손해보험 대형 3사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이미 통합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는 점이다. DB손해보험은 2016년부터, 삼성화재는 2020년부터 그리고 현대해상은 2022년부터 통합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통합보고서는 지금은 ISSB로 통합된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에서 제공하는

국제통합보고체계(IR Framework)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통합한다.

〈표 IV-4〉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손해보험)

회사명	보고서명	작성기준	발행연도	주기
DB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 통합보고서	G, T	2022, 2021	매년
		G, I, T	2020	매년
		G, I	2019~2016	매년
	DB손해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15~2011	매년
삼성화재해상 보험	삼성화재보험 통합보고서	G, T	2022~2020	매년
	삼성화재보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19~2013	매년
		G	2012	격년
		G	2010	격년
현대해상화재 보험	현대해상 통합보고서	G, S, T	2022	격년
	현대해상 지속가능보고서	G	2020	격년
		G	2018	격년
		G	2016	격년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2021	매년

주: G=GRI, I=IIRC, S=SASB, T=TCFD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자료실 지속가능 보고서 현황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4대 금융지주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작성 기준으로는 TCFD, SASB와 GRI 표준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GRI 표준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작성기준이었으나 이후 지속가능 보고에서 투자자 관점의 재무공시 측면이 확산되면서 TCFD와 SASB 기준이 함께 사용되는 추세이다.

〈표 IV-5〉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 현황(생명보험)

회사명	보고서명	작성기준	발행연도	주기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매년
		G, S	2021	매년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22, 2021	매년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 ESG 보고서	G, T	2022	매년
	삼성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2021~2012 (2013 제외)	매년
	삼성생명 통합보고서	G	2013	매년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 S, T	2022	매년
		G, S	2021	매년
		G	2020~2011	매년

주: G=GRI, S=SASB, T=TCFD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자료실 지속가능 보고서 현황; 교보생명 홈페이지

현재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초기 단계로 Scope 1과 2에 대한 공시도 일부 회사에 국한되며 특히 Scope 3 배출량은 극히 일부 선도회사만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공시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에 기반한 감축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규제 정비 시 고려사항

IFRS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에 관한 일반 공시기준과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의견수렴을 거친 수정안을 2023년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TCFD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온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재무공시에도 통일된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2025년 단계적인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예정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정비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 공시 제도를 만드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기준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은 제조업 위주로 탄소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공시 관련 부담을 높이면서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해외 공시규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속가능 요소가 재무공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규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가.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이중 중요성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던 비재무정보는 정책전환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 정보에 기반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 등 재무적 영향을 포함하도록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기존 NFRD를 CSRD로 개정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앞으로 발표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기준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가 투자자에게 유용하면서 비교가능하게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는 SEC 기후 관련 재무공시와 CSRD 모두 투자자 중심의 지속가능 공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단일 중요성과 이중 중요성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 중심의 전통적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정비하는 미국 SEC와 달리, GRI 표준이 토대인 유럽의 ESRS를 따르는 CSRD는 이중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 공시의 본래 목적, 즉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외부효과를 공시하는 기능을 간과하지 않는 장점과 함께, 투자자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한 지속가능 공시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해관계자에 중심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 중심의 '재무공시'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찾아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존 지속가능성 공시 기반 위에 투자자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관점의 공시는 지속가능성 요소 중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이 공시되므로 기업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공시되지 않거나 그린워싱 등의 오도 가능성도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지

속가능 공시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단일 중요성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가 줄어들면 공시 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를 시행 중인 대다수 우리 기업이 이미 GRI 표준에 기반한 영향 중요성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익숙한 상황이며 여기에 TCFD 권고안의 재무적 중요성을 더하여 공시 중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행 자발적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탄소 중립 경제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 정보의 재무공시 통합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장 지속가능 정보를 기존 재무공시에 통합하는 방안은 지속가능 정보의 인식과 측정 문제 그리고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이에 따른 법규 리스크 등 실무적 관점에서 아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킬 우려가 있다.

나. 보고의 형태

TCFD는 권고안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시를 기존의 재무제표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ISSB도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에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의 기간과 연결범위 등을 기존 회계공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기존 재무공시와 지속가능 공시를 수렴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 관련 공시 내용을 재무제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속가능성 공시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정보와 이질적인 정성적 지표가 많다. 현행 재무제표 공시에서도 투자자에게 반드시 중요한 정보라면 재무제표 주석(Note)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 공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주석으로 포함되는 것이 투자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재무공시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석도 그 신뢰성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지속가능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면 기업은 법규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과 규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가능 공시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려 하고 있다. 우선 ISSB는 지속가능 공시를 기존 재무보고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지만 보고 형태나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에 내용을 담아 다양한 형태

로 공시가 가능하며 특히 재무보고와 상호참조를 하면 별도 보고서의 형태로도 지속가능 공시를 허용한다.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도 재무제표의 주석 형태의 공시방안과 함께 연차 보고서의 경영진 의견인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섹션을 통한 지속가능보고를 선택지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시 기업은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 EU의 지속가능 공시기준(ESRS)에서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재무제표와 별도로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경영진 보고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규제의 정비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형태와 보고 위치 그리고 재무제표와의 연관성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가용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와 이로 인한 공시 기업의 법규 리스크를 비롯한 공시 부담과 함께 지속가능 공시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 포함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6〉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보고형태

공시기준·규제	보고양식	재무제표와 관계
ISSB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	상호참조
SEC	재무제표 주석 또는 MD&A ¹⁾	-
ESRS	경영진 보고서 내 지속가능보고서 타이틀로 분리	재무제표와 분리

주: 1)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자료: IFRS(2022a); SEC(2022); EFRAG(2022c)

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는 기업활동의 안 좋은 외부효과를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노출시켜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등의 방식을 통하여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가치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투자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직·간접 배출량 공시는 지속가능성 측면과 재무공시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중요한 공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시 정보의 가용성, 특히 Scope 3 공시를 위한 공급망 배출량은 인식과 측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며 정보의 품질 측면에서도 공시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표 IV-7〉 지속가능 재무공시 기준·규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요구사항

공시기준·규제	Scope 1, 2	Scope 3	비고
ISSB	의무	최소 1년간 면제	-
SEC	의무	중요한 경우 배출량 목표를 설정한 경우	Scope 1, 2 인증
ESRS	의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외	집약도 공시

자료: IFRS(2022a); SEC(2022); EFRAG(2022c)

특히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서 간접배출의 비중을 고려하면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된다. 특히 보험 및 금융회사 등은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나타난다.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 논의과정에서도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Scope 3 배출량 공시의 도입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아직 가치사슬 관련 Scope 3 측정 및 공시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되는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피조항(Safe harbor)과 유예를 통하여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공시 의무를 철저히 부과하는 Scope 1과 2 배출량과 달리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ISSB는 최소 1년간 Scope 3 배출량 공시를 면제하고 공급망 내 Scope 1, 2 공시를 통하여 Scope 3 배출 관련 데이터 수집과 추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 SEC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에서도 Scope 1, 2 배출량은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우와 Scope 3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SEC 규칙안은 Scope 3 배출 관련 데이터 자체의 낮은 신뢰성을 감안하여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 보고’로 간주하지 않는 안전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U의 지속가능 공시기준(ESRS)은 Scope 1, 2, 3 공시를 모두 요구하면서도 Scope 3의 경우, 관련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데이터 가용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가용 데이터의 확보 문제는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 특히 Scope 1, 2 공시가 정착되면서 시간에 걸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속가능 공시기준과 규제에서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위한 데이터 품질도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ISSB는 지속가능 공시 작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Scope 3 배출량 공시 이행 및 적용 관련 지침을 개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 지침에 Scope 3 공시범위의 결정 방법과 산업별로 관련성이 높은 Scope 3 배출 카테고리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담기로 하였다.

2025년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와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빠른 시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Scope 3 공시는 아직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 정도가 낮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치사슬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하고 측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탁·협력회사로 가지거나 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공급망의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시 기업에 Scope 3 배출량 데이터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민감한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유도하게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고려사항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부채와 자산 양 측면에서 모두 노출되어 있다. 보험인수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은 보험금 지급에 따른 부채 측면에서 그리고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보유 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은 자산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기후위기의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난 등을 통하여 보험인수 측면으로, 전환 리스크는 자산가격 변동을 통하여 자산운용 측면으로 영향을 주로 미치게 되어 지속가능성 요소는 보험회사의 사업모형과 관련성이 높아 지속가능 공시는 보험산업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제도 관련 논의는 보험산업의 사업모형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의 위험과 기회는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 투자자나 자산 운용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장기투자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듀레이션 측면에서 다른 금융회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과정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측면은 GHG 프로토콜의 Scope 3 배출 인벤토리 중 카테고리15(투자)의 금융 배출 (Financed Emission)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진 다른 금융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인수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는 보험산업에 특화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CAF(2022)와 NZIA(2023)에서 상술하였듯이 보험 관련 배출량(IAE) 공시는 GHG 프로토콜 Scope 3 인벤토리 중 카테고리15(투자)에 포함시켜 합산하게 되면 정확한 배출량 공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PCAF는 보험관련 배출량 공시 시에 투자 항목에 공시하되 반드시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은 GHG 프로토콜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 공시 관련 논의 시에는 금융업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세밀하게 구분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산업의 공시 관련 특성이 이미 PCAF를 통하여 나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지속가능 공시 정비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공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Scope 1과 2 배출량에 대한 공시도 일부 회사에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가능 공시의 무화되면 배출량 공시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지금부터 적어도 Scope 1과 2에 대한 배출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출량 공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Scope 1 및 2 배출량에 익숙한 보험회사는 Scope 3 배출량의 인식 및 측정 방안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Scope 3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고유의 사업모형인 자산운용과 보험인수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에 대한 실행 과정에 대한 공시가 보험회사 지속가능 공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므로 보험회사는 과학적 기반의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보험

회사는 금융배출과 보험관련 배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기업과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 방식을 통하여 Scope 3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면서 지속가능 공시 측면에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그동안 기업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외부 비경제(Negative Externality)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이 증대되고 2015년 파리협정을 거치면서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정책 도입으로 전환 위험도 가시화되면서,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재무공시 체계로 통합하고자 지속가능 재무공시의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EU를 필두로 지속가능 공시를 재무적 중요성을 포함하여 제도화하려는 추세이다. 이같은 상황은 결국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투자자에게 이미 중요한 투자결정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지속가능성 요소의 재무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중요 투자결정 요소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공시하여 투자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속가능 공시제도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적시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장규율 메커니즘이다. 기업들이 노출된 각종 지속가능 위험과 기회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정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하고 비교가능하게 공시해야 투자자금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GRI 표준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공시의 국제기준이 TCFD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통하여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 국제기준으로 발표되고, EU와 미국의 기업공시체계에서 지속가능 재무공시가 제도화되면서 논의된 주요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한 공시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해외의 국제기준과 공시규제 제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들은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는 데 좋은 타산지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기업으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인류의 안녕과 더 나아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수연·이태(2022),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 김신영·홍운선(2021), 「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 심수연(2022),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시행 및 관련 펀드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2-12, 자본시장연구원
- 이승준(2021),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이슈보고서』, 21-01, 보험연구원
- 이인형·이상호(2021), 「지속가능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조사보고서』, 21-01, 자본시장연구원
- 정신동(2022), 「‘기후 공시’ 규제 뛰어넘을 생태계 조성을」, 『Dong-A Business Review』, Vol. 357
- 최유경·정아름(2021),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I)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
- 최유경·조아영(2021),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 현황 및 쟁점: NFRD와 SFDR 도입과 EU 회원국의 국내법적 수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 홍지연(2022),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2-11, 자본시장연구원
- 홍철규(2022), 「유럽, 미국,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의 특징 분석 및 회계학적 고찰」, 『회계저널』, 제31권 제4호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시 가이드스
-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자료실 지속가능 보고서 현황
- 교보생명(<https://www.kyobo.com/>)

AICPA&CIMA(2021), “Sustainability Frameworks and Standards: TCFD”

AON(2023), “Q1 2023 Catastrophe Recap”

Cadwalader, Wickersham & Taft(2022), “SEC Proposes Climate-Related Changes to Regulation S-K and Regulation S-X”

CDP(2022) “Scoping Out: Tracking Nature Across the Supply Chain”, Global Supply Chain Report 2022

CDP, CDSB, GRI, IIRC and SASB(2020),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Christensen, Hans B., Luzi Hail, and Christian Leuz(2021), “Mandatory CSR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Economic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Deloitte Netherlands(2023), “SFDR compliance”

Deloitte(2022),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_____ (2023), “Timeline for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C(202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of 6 April 2022”

EFRAG(2021), “Proposals for a Relevant and Dynamic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Setting”

_____ (2022a),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1 Double materiality conceptual guidelines for standard-setting”

_____ (2022b), “DRAFT EUROPEAN SUSTA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RS 1 General requirements”

_____ (2022c), “DRAFT EUROPEAN SUSTA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RS 2 General disclosures”

_____ (2022d), “DRAFT EUROPEAN SUSTA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RS E1 Climate change”

ESMA(2022), “SUSTAINABLE FINANCE Implementation timeline for SFDR, TR, CSRD, MiFID, IDD, UCITS, AIFMD”

EY(2022),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Fantini, Lorenzo, Michele Millosevich, Rebecca Waddell, Yohei Takabe, and Pia Tischhauser(2022) “The Net Zero Insurers”, Boston Consulting Group

GFMA and BCG(2020), “Climate Finance Markets and the Real Economy”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19), “2019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_____ (2021), “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IFRS(2022a),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_____ (2022b),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_____ (2023), “ISSB Updates”, last modified, Accessed April 30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1),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IPCC(2023), “The 6th Assessment Report(AR6) Synthesis Report(SYR)”

Katz, David and Laura McKintosh(2021), “Corporate Governance Update: “Materiality” in America and Abroad”,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Kepler and Cheuvrerux(2015), “Investor Guide to Carbon Footprinting, Carbon Compass”

Kirkland and Ellis(2022), “ISSB’s Proposed Framework Seeks to Unify Global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KPMG(2022), “Big Shifts, Small Steps: Survey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NZIA(2023), “Target-Setting Protocol” Version 1.0

PCAF(2022), “Insurance Associated Emissions: 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Part C”

S&P Global Ratings(2022), “ESG Materiality Map Insurance”

SBTi(2023) “SBTi Corporate Net Zero Standard”

Sebastian Steuer and Tobias H. Tröger(2022), “The Role of Disclosure in Green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Vol. 8, No.1

SEC(2022),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Final Report

_____(2021), “Guidance on Metrics, Targets and Transition Plans”

_____(2022), “TCFD 2022 Status Report”

UNEP(2016),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Inquiry Working Paper
16/1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 and Oliver Wyman(2021), “Financing the Transition to a
Net-Zero Future”

GRI Website(<https://www.globalreporting.org/about-gri/mission-history>)

IFRS(<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ssb/>)

1. ISSB Update on 4/19/2023

- ISSB는 2023년 4월 19일 회의에서 SASB 표준 및 SASB 표준 분류 업데이트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개 초안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적법 절차 단계를 비준하고 논의
 - ISSB는 다음과 같이 결정
 - 공개초안 비준
 - 90일 동안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14명의 ISSB 회원 모두는 ISSB가 해당 적법 절차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에 만족한다고 확인
- 다음 단계
 - ISSB는 2023년 5월에 공개 초안을 발표할 예정
 - 공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ISSB가 제안된 SASB 표준 개정안과 SASB 표준 분류법에 대한 해당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줌
- ISSB 의제 우선순위 협의(의제 문서 2)
 - ISSB는 2023년 4월 19일에 만나 ISSB의 의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요청 초안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적법 절차 단계를 논의
 -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ISSB의 2개년 작업 계획을 알려줌
 - 14명의 ISSB 회원 모두는 ISSB가 해당 적법 절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정보 요청을 제시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 및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확인
 - ISSB는 다음과 같이 결정

- 정보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120일을 허용하고 공개 의견을 위한 정보 요청을 게시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2023년 5월에 정보 요청을 게시할 예정

2. 보충적 ISSB Update on 4/4/2023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 ISSB는 2023년 4월 4일 회의를 열어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에서 제공할 과도기적 완화(Transitional Relief)를 추가로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적용하는 첫해에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명시된 대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IFRS S1에 과도기적 완화를 도입하기로 결정
- 기업은 두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해부터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ISSB는 2023년 2월 회의에서 IFRS S1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연차보고 기간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요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1년간의 과도기적 완화는 IFRS S1의 발효일을 변경하지 않음
- 그러나 첫 해에 이 과도기적 완화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IFRS S1의 요건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
- 이 과도기적 완화는 IFRS S2의 적용 또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ISSB는 또한 기업이 과도기적 완화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잠정적으로 결정
 - a. 기업은 과도기적 완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시
 - b. 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첫해에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관련된 비교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교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IFRS S1에서 이전에 합의한 과도기적 완화를 확장하며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두 번째

해에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비교 정보를 요구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3. ISSB Update on 3/16/2023

○ ISSB 의제 우선순위 협의(의제 문서 2)

- ISSB는 2023년 3월 16일에 만나 ISSB의 첫 번째 정보 요청에 포함될 잠재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를 논의
- 정보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피드백은 ISSB의 2개년 작업 계획을 알려줌
- 2022년 12월 회의에서 ISSB는 잠정적으로 정보 요청에서 네 가지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구하기로 결정했으며 4개의 잠재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보고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고 IASB의 관리 해설(Management Commentary) 프로젝트 및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의 공동 프로젝트(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로 설명
- 이 회의에서 ISSB는 잠정적으로 정보 요청 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 a. 다음으로 보고할 때 연결에 대한 잠재적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
 1. 보고 통합에 중점
 2.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의 연결된 정보와 관련된 요건을 뛰어넘는 통합 공시를 고려
 - b.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연결된 정보와 관련된 S1 및 S2의 요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
 - c. 공식적인 공동 프로젝트로 제시하기보다는 IASB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ISSB 프로젝트로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제시
 - d. 보고 통합에 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질문의 틀을 잡음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 ISSB는 또한 정보 요청에서 다음과 관련하여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 데 잠정적으로 동의
 - a. 정보 요청에 포함된 다른 잠재적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긴급성
 - b.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가 IASB와의 공식적인 공동 프로젝트인지 또는 필요에 따라 IASB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는 ISSB 프로젝트인지 여부
 - c. 보고 통합에 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가 IASB의 경영설명서 프로젝트,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 해당 문서 또는 다른 출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통합해야 하는지 여부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정보 요청을 개발할 때 취한 적법 절차 단계를 논의하고, 의견제시 기간의 길이와 정보 요청의 발표 날짜를 결정할 것임

4. ISSB Update on 2/16/2023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및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3년 2월 16일 회의를 열어 공시 초안 IFRS S1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초안 S1)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초안 S2)를 재심의하고 IFRS S1 및 IFRS S2에 대한 투표 프로세스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했으며 ISSB는 다음과 같이 논의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및 관련 공시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지침의 출처(의제 문서 3A)
 - IFRS S1 및 IFRS S2의 발효일 및 이전에 합의된 과도기적 완화 기간(의제 문서 3B 및 4A)
 - 적법 절차 단계 및 IFRS S1 및 IFRS S2에 대한 투표 절차 시작 여부(의제 문서 3C 및 4B)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및 공시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 출처(의제 문서 3A)

- ISSB는 초안 S1의 요건을 수정하여 작성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그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식별할 때 '요건이 일반목적 재무보고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른 표준 설정 기관의 가장 최근 발표'를 고려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지만 요구하지는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ISSB는 또한 작성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식별할 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GRI) 및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D)를 고려하도록 요구가 아닌 허용 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지침 출처는 IFRS S1의 부록에 나열
- 이 결정을 내리면서 ISSB는 작성자가 관련 IFRS 지속가능성 표준이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출처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출처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함
 - a. 이러한 출처에 따라 공시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 정보를 가리지 않음
 - b. 이러한 출처에 따라 작성된 공시는 IFRS S1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가 변경되지 않음
 - c. 모든 공시는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며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발효일(의제 문서 3B 및 4A)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IFRS S1과 IFRS S2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간 보고 기간에 대해 유효하도록 요구했으며 14개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b. IFRS S1 및 IFRS S2의 조기 적용이 허용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c.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만 기업이 IFRS S1과 IFRS S2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d.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함을 확인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

- ISSB는 잠정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기 위해 단기 과도기적 완화를 적용하는 법인을 허용하기로 결정
 - a. 기업이 그러한 중간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중간 보고서와 동시
 - b.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중간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2분기 또는 반기 중간 보고서와 동시에, 그러나 연간보고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 c. 기업이 중간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없는 경우, 연간 보고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또한 ISSB는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적용하는 첫 번째 연차보고 기간에 다음을 제공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 a.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해야 하는 요건 완화 (ISSB의 이전 결정에 따름)
 - b. GHG 프로토콜에 따라 Scope 1, Scope 2 및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요건 완화, 기업이 IFRS S2의 최초 적용 직전 연차보고 기간에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 c. Scope 3 GHG 배출량 공시 요건 면제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적법 절차 및 투표 허가(의제 문서 3C 및 4B)
- 14명의 ISSB 회원 모두는 ISSB가 해당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하고 IFRS S1 및 IFRS S2에 대한 투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상담 및 분석을 완료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확인
 - ISSB는 IFRS S1 및 IFRS S2를 다시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어떤 ISSB 회원도 IFRS S1 및 IFRS S2 발행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다음 단계
- ISSB는 투표 절차를 시작하고 2023년 2분기 말에 기준을 발표할 예정

5. ISSB Update on 1/17~19/2023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및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3년 1월 17~19일 회의를 열어 노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초안 IFRS S1)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초안 IFRS S2)의 제안 중 일부를 재심의했으며 ISSB는 다음과 같이 논의
 - 초안 IFRS S1 및 초안 IFRS S2에서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하기 위해 제안된 목표(의제 문서 3A)
 - 기업이 판단, 가정 및 추정을 공시하도록 IFRS S1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의제 문서 3B)
 -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의 개념과 이 개념을 IFRS S1 및 IFRS S2에 도입할 지 여부와 방법(의제 문서 3C 및 4D)
 -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IFRS S1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Agenda Paper 3D)
 - 초안 IFRS S1 및 초안 IFRS S2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를 공시하기 위한 요건(의제 문서 3E 및 4E)
 - 연결된 정보에 대한 초안 IFRS S1의 제안된 요건(의제 문서 3E 및 4E)
 - 기업이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도록 IFRS S2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의제 문서 4A)
 - IFRS S2 초안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잠재적인 보고 경감(의제 문서 4B)에 관한 제안된 요건
 - IFRS S2 초안에서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공시하는 제안된 요건(Agenda Paper 4C)

○ 지표 및 목표 목적(의제 문서 3A)

- ISSB는 초안 IFRS S1 및 초안 IFRS S2에서 지표 및 목표 공시의 제안된 목적을 논의했고 기업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적임을 잠정적으로 명확히 하기로 ISSB는 결정

- a. (해당 지표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 b. (기업이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에서 요구하는 지표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판단, 가정 및 추정치의 공시(의제 문서 3B)

- ISSB는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내린 판단, 가정 및 추정치를 공시하기 위해 IFRS S1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판단을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건을 도입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b.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가 없는 경우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지침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IFRS S1 초안 문단 55를 수정하고 이 요건에는 기업이 사용하는 산업기반 지침 소스(예: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SASB 표준 또는 기타 산업기반 지침 소스)에 지정된 산업 또는 산업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c. 초안 IFRS S1의 문단 79에 있는 지표와 관련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요건이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효과에도 적용됨을 확인했으며 이 추정 불확실성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추정 불확실성이 포함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d. IFRS S1 초안 문단 80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단어는 'IFRS 회계기준 또는 기타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의 요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를 의미함을 확인

- 참석한 13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e.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 데이터 및 가정과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재무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f.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를 적용할 때 기업이 다음을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는 판단, 가정 및 추정치의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

1. IFRS S1에 대한 설명 지침에 포함되는 예

2. 미래에 제공될 교육 자료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
(Agenda Paper 3C 및 4D)

- ISSB는 IFRS S1 초안과 IFRS S2 초안에서 높은 수준의 측정 또는 결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제안된 공시 요건을 적용할 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
- ISSB는 IFRS S1 및 IFRS S2에 '보고일에 사용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이 기준서의 특정 요건을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 a. 지속가능성 관련 및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IFRS S1 및 IFRS S2)
 - b. 가치 사슬 관련 요건, 특히 다음에 관한 요건을 적용
 1. 기업 가치 사슬의 범위(IFRS S1 및 IFRS S2)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업의 측정(IFRS S2)
 - c. 기업의 재무 성과, 재무 상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 효과 결정(IFRS S1 및 IFRS S2)
 - d.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적용(IFRS S2)
 - e. 자산 또는 사업 활동의 금액 및 비율 계산(IFRS S2)
 1. 전환 위험에 취약

2. 물리적 위험에 취약

3. 기후 관련 기회와 일치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기회에 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Agenda Paper 3D)

-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제안된 요건에 대한 피드백, 특히 이 정보 중 일부가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피드백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IFRS S1에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 공시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 면제를 적용
 - a.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쟁 우위로 이어질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업이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특정 이유가 있는 경우
 - b. 기업의 정보 공시는 기업이 기회를 추구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 c. 기업이 상업적 민감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나 집계 수준으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면제를 적용할 때 생략된 정보 항목에 따라 법인에 다음이 요구
 - a. 면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시
 - b. 정보가 여전히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각 보고일에 재평가
- ISSB는 또한 잠정적으로 이 면제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명시하기로 결정
 - a. 이미 공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에는 적용할 수 없음
 - b. 기업이 광범위한 비공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업적 민감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c. 기업이 공시에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이 면제는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되며 정보

가 공시되지 않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

- 참석한 ISSB 회원 13명 전원이 이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현재 및 예상 재정 효과 및 관련 정보(의제 문서 3E 및 4E)

- ISSB는 2022년 11월 회의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계속
 - IFRS S1 초안 및 IFRS S2 초안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를 공시하기 위한 제안된 요건
 - IFRS S1 초안에서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사용자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가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제안된 요건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IFRS S1 초안과 IFRS S2 초안을 수정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위험 및 기회와 현재 및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연결을 설명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하며 범용 재무제표를 상호 참조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지정된 조건에 따라 상호 참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b. IFRS S1 초안 및 IFRS S2 초안 수정
 1.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효과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확인하고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질적 정보를 제공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2. 기업이 다음을 고려하여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확인
 - 가.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정적 영향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높은 수준의 결과 또는 측정 불확실성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

회의 재정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의 경우에만 한정하면, 해당 기업이 그러한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및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확장성 및 비례성의 필요성 해결)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3.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을 확인

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

나.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재무제표 내의 라인 항목, 총계 및 소계 식별을 포함하여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제공

다.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집계 수준에서 제공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ISSB는 기업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을 언급

a.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에 대한 요건을 적용할 때 판단을 적용

b.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재무제표의 주요 사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c.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을 출발점으로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a. IFRS S1 초안 및 IFRS S2 초안 수정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준비되는 보고 기간과 해당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를 언급하기 위해 일관된 언어를 사용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신 '단기, 중기 및 장기'라는 문구를 일관되게 사용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b. IFRS S1 초안과 IFRS S2 초안을 수정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

1. 회복력 평가 요건과 기업이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를 공시하기 위한 요건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요건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회복력 평가를 통해 현재 및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을 알릴 수 있음을 강조
 2.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회복력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기후 회복력 평가(의제 문서 4A)

- ISSB는 기업이 기후 관련 변화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성을 공시하기 위해 IFRS S2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을 논의
 - ISSB는 기업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보고일에 이용 가능하며 모든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공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에는 과거 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
 - ISSB는 또한 상황에 맞는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선택할 때 기업이 다음을 고려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
 - a.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된 정도
 - b.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 및 자원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ISSB는 적용 지침이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을 개발하고 정보 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온실가스 배출량 - 보고 기간 경감(의제 문서 4B)

- ISSB는 2022년 12월 회의에 이어 기업이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IFRS S2 초안 문단 21(a)의 제안된 요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

- ISSB는 해당 정보가 해당 기업의 보고 기간과 다른 보고 기간을 가진 가치 사슬의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해당 보고 기간과 다른 보고 기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GHG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유효
 - a. 기업은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
 - b. 기업의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의 보고 기간 길이는 기업의 보고 기간 길이와 동일
 - c. GHG 배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 및 변화의 영향을 공시
 - 1. 기업의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의 보고 날짜
 - 2. 기업 자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날짜
- ISSB는 이 규제책이 기후 이외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기후 관련 목표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의제 문서 4C)

- ISSB는 IFRS S2 초안의 문단 23에서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논의
- ISSB는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약속에 의해 그러한 대상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포함하여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가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23(e)항의 제안된 요건을 잠정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으며 ISSB는 잠정적으로 IFRS S2에 대한 결론의 근거가 이 요건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결정
- 이러한 잠정적 결정은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제3자에 의해 검증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하는 23(e)항의 다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IFRS S1 및 IFRS S2의 발효일을 포함하여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표준 투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IFRS S1 초안 및 IFRS S2 초안의 제안을 계속해서 재심의

6. ISSB Update on 12/13~15/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 ISSB는 2022년 12월 13일 회의를 열어 공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초안 S1)의 일부 제안을 재심의
- ISSB는 임시로 S1 초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로 결정
 - a. 기업이 자신과 투자자 및 채권자를 위해 창출, 보존 또는 잠식하는 가치가 다른 이해 관계자, 사회 및 자연환경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 b. 기업이 자신과 투자자 및 채권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자원과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 c. 기업이 가진 자원 및 관계에 대한 의존도와 자원 및 관계에 대한 미치는 기업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
 - d.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성과, 전망,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와 투자자 및 채권자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ISSB는 또한 잠정적으로 S1 해설 지침(Illustrative Guidance) 초안의 측면을 확장하고 명확히 하기로 결정
 - a. 다음 사이의 구별과 연결을 명확히 하기 위함
 -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2. 그러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식별
- b.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그러한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
 3.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때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 c.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지침을 제공했으며 그러한 지침은 다음을 논의할 수 있음
 1.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및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주요 사용자
 2. 기업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
 3.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
 - d.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사업모형과 같이 복잡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이 SASB 표준을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이러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
- a.~c.에 설명된 추가 예시 지침은 IFRS Practice Statement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및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Exposure Draft Management Commentary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시장 자원을 활용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향후 회의에서 초안 S1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 제안된 공개를 계속해서 재심의할 예정

○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2년 12월 14~15일에 만나 공시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초안 S2)에서 다음과 관련된 제안을 재심의
 - 기업이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시하기 위한 요건(의제 문서 4A 및 4B)

- 부록 B의 산업기반 자료(의제 문서 4C)
- 자금 조달 및 촉진 배출을 공시하기 위한 독립체의 요건(Agenda Paper 4D)

○ 온실가스 배출(의제 문서 4A)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S2 초안의 단락 21(a)(ii)에서 제안된 요건을 제거하여 기업이 GHG 배출 집약도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중 9명이 이 결정에 동의
 - b. S2 초안에는 구성 가스별로 GHG 배출량 공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명시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 c. 기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PC)의 최신 평가의 지구 온난화 잠재력 값을 100년의 시간 범위를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요건을 도입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d. 기업이 GHG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입력, 가정 및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기업에 대한 요건을 도입하고 이 요건의 일부로 기업은 보고 기간 동안 사용하는 추정 기법의 변경과 중요한 가정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공시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e. S2 초안 21(a)(i)(2)의 요건을 수정하여 범위 2 GHG 배출량을 공시할 때 구매한 에너지 관리와 연관된 계약 문서에 대한 관련 정보와 함께 기업이 위치 기반 방법(해당 지역 그리드의 평균 배출량 강도를 반영)을 사용해야 하며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

○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의제 문서 4B)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Scope 3 GHG 배출량을 공시하는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방법을 소개
 - 1. IFRS S2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 Scope 3 GHG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요건의 일시적인 면제를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결정에 동의
 - 2. 다음을 조건으로, 기업이 기업의 보고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보고 주기를 가진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여 Scope 3 GHG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책

가. 기업은 범위 3 GHG 배출량을 추정하고 공시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

나. 보고 기간의 길이는 기간마다 동일

다. 기업은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의 보고일과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일 사이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 및 상황 변화의 영향을 공시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b. 2022년 12월 ISSB 회의의 의제 문서 4B는 기후 관련 공시 -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의 48항과 50항에 설명된 대로 범위 3 GHG 배출량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c. Scope 3 GHG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요건을 도입하여 기업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사용자가 Scope 3 GHG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이러한 요건은 기업이 다음을 공시하도록 지정

1. 기업의 가치 사슬(‘기본 데이터’)에서 특정 활동의 입력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Scope 3 GHG 배출량 공시의 정도(예: 총 Scope 3 GHG 배출량의 백분율)를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2. 검증된 입력을 사용하여 범위 3 GHG 배출량 공시를 추정하는 범위(예: 총 Scope 3 GHG 배출량의 백분율)를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3. 기업이 Scope 3 GHG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Scope 3 GHG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법(‘생각’하는 방법)을 14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d. 다음과 같이 가치 사슬에 대해 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구제 조치를 도입

1. Scope 3 GHG 배출을 예로 사용하여 기업이 가치 사슬에서 어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일반목적 재무보고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행 지침

2. 중대한 사건이나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이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e.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설명된 15개의 Scope 3 GHG 배출 카테고리 중 어떤 것이 해당 Scope 3 배출량 측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측정방식이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부록 B(의제 문서 4C)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부록 B의 산업기반 요건이 S2 예시 지침의 일부가 되도록 초안 S2를 수정
 - b.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부록 B를 강화
 - 1. 일부 공시 주제 및 지표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에 응답
 - 2. 부록 B와 SASB 표준 간의 불일치를 해결
 - 3. 부록 B의 서로 다른 산업기반 요건에서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트릭이 사용되는 방식 간의 불일치를 해결
 - c. 일부 메트릭의 포함 또는 누락으로 인해 도입된 범위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부록 B를 수정
 -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금융(Financed) 및 촉진(Facilitated) 배출(Agenda Paper 4D)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세 가지 산업(자산 운용 및 관리 활동, 상업 은행 및 보험)에 대한 금융 배출에 대해 제안된 공시 요건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건을 부록 B에서 S2 적용 지침 초안의 일부로 이동하고 따라서 기업은 Scope 3 GHG 배출량 공시의 일부로 금융 배출량을 공시했으며 14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 b. 금융 배출 공시를 위한 다음 제안을 확인
 - 1. a.에 나열된 산업에서 '금융 배출'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
 - 2. 자산 관리 및 보관 활동 산업의 법인이 관리 중인 총 자산 수준에서 공시를

집계해야 하지만 해당 집계가 중요한 정보를 가릴 수 없다는 요건이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3. a.에 나열된 산업에서 기업이 금융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이며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4. 금융 배출의 산업기반 공시를 위한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GICS)의 사용하고 14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c. 기업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활동 단위당 자금 조달 배출량의 GHG 배출 강도를 공시해야 한다는 제안된 요건을 삭제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
- d. 투자 은행 및 중개 산업의 기업이 배출 축진을 공시하도록 제안된 요건을 삭제하는 것 즉, 이러한 제안된 공시 요건은 S2의 모든 부분에서 제외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 e. 인출되지 않은 대출 약정을 공시하기 위해 상업 은행 산업 또는 보험 산업의 기업에 대해 제안된 요건을 확인하는 것 즉, 미사용 대출 약정과 관련된 재무 익스포저 및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했고 한 회원은 불참
- f. 상업 은행 산업에 속한 기업이 위험 경감을 고려하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공시를 제공한다는 제안된 요건을 확인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했고 한 회원은 불참
- g. 부록 B를 수정하여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의 공시를 세분화하기 위한 모든 참조 및 요건을 삭제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했고 한 회원은 불참
- h. 금융 배출량을 계산할 때 파생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된 요건을 삭제하기 위해 부록 B를 수정하고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 결정에 동의했고 한 회원은 불참

○ 다음 단계

- ISSB는 향후 회의에서 초안 S2의 제안을 계속해서 재심의할 예정

○ ISSB 의제 우선순위 협의(의제 문서 2)

- ISSB는 2022년 12월 14일에 만나 ISSB의 2개년 작업 계획을 알리기 위해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수집할 정보 요청에 포함될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논의
- ISSB는 정보 요청에 포함될 잠재적인 프로젝트 목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 및 연구 활동 요약을 논의했으며 ISSB는 잠재적인 프로젝트와 각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설명에 포함할 내용 및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에 관한 정보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기로 결정
 - a. 잠재적인 연구 프로젝트
 - 1. 생물 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 2. 다양성, 형평성 및 포함에 초기 초점을 둔 인적 자본
 - 3. 가치 사슬에서 노동권과 공동체의 권리에 초기 초점을 둔 인권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의 잠재적인 공동 프로젝트는 IASB의 Management Commentary 프로젝트 및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보고 연결성에 관한 내용
- 14명의 ISSB 회원 중 13명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정보 요청을 개발할 때 취한 적법 절차 단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

7. ISSB Update on 11/15~16/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및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2년 11월 15~16일 회의를 열어 공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초안 S1)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개(초안 S2)의 제안 중 일부를 재심의

○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 및 연결 정보(의제 문서 3A 및 4B)

- ISSB는 재무 성과, 재무 상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의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과 관련된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초안)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 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피드백을 논의했으며 ISSB는 연결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S1 초안의 요건에 대한 피드백도 논의하고 미래의 직원 권고 사항을 알리기 위해 ISSB는 이러한 요건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의 예시를 논의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다음 단계

- ISSB는 기업이 요건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개발을 포함하여 현재 및 예상 재무 효과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제안된 요건에 대한 Staff 권장 사항을 고려 예정

○ 비교 정보 및 업데이트된 추정치(의제 문서 3B)

- ISSB는 기업이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하는 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을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S1 초안 문단 64에 명시된 제안된 요건을 수정하여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비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요건을 제한하여 이전 기간에 공시된 이전 보고 기간의 추정치에 적용하고 이전 기간에 공시된 미래 추정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b. 기업이 요건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시 지침을 제공하고 그러한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1.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비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예
 2.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 비교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의 예 및 설명
 3. 기업이 비교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은 (1)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 (2) 재정적되거나 대체된 메트릭 또는 목표를 반영, 또는 (3) 오류를 수정

- 13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다음을 고려
 - a. 특정 초안을 변경하여 초안 S1의 단락 64에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
 - b. 기업이 요건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개발

○ 보고 시기(의제 문서 3C)

- ISSB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초안 S1)에서 기업이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기업이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도록 제안된 요건을 확인하고 13개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b. 기업이 재무제표 이후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 과도기적 완화를 도입하고 13명의 ISSB 회원 중 11명이 이 결정에 동의
 - c. 이 과도기적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이 H1·Q2 수익 보고와 동시에 연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3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계속해서 제안된 요건을 재심의하고 다음에 대한 Staff Recommendation 사항을 고려
 - a. 기업이 H1·Q2 수익 보고와 동시에 연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도록 허용하는 단기 과도기적 완화를 명시하는 방법
 - b. S1 발효일 이후 이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전략 및 의사 결정과 기후 관련 목표(의제 문서 4A)

- ISSB는 기업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계획 및 기후 관련 목표를 포함하여 전략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초안 S2)에

서 제안된 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피드백을 고려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전략 및 의사 결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계획 및 기후 관련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기 위해 초안 S2의 단락 13 및 23에 제안된 요건을 확인했으며 13명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b. 전환 계획을 개발할 때 기업이 설정한 가정과 식별한 중속성을 공개하도록 기업에 요구했으며 13명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c.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기업이 전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13명의 ISSB 회원 중 12명이 이 결정에 동의
 - d. 기업이 다음을 포함하여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1. 기업 목표의 범위를 13명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2. 기업의 배출 목표가 적용되는 온실가스 및 배출 범위, 13명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3. S2 초안의 23항에 있는 요건을 적용할 때 기업이 참조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하고 13명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과 비교하도록 하는 S2 초안의 제안된 요건을 추가로 논의 예정
-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IFRS S1 일반 요건(S1 초안)과 S2 초안의 제안을 계속해서 재심의

○ 분류체계 관련 논의

○ IFRS 지속가능성 공개 분류 체계(의제 문서 7)

- ISSB는 2022년 11월 15일에 모여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초안)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를 기반으로 제안된 IFRS 지속가능성 공시 분류법의 직원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다음 단계

- ISSB는 Staff 연구 및 피드백을 고려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IFRS 지속가능성 분류법제안을 개발 예정

8. 보충적 ISSB Update on 11/1~3/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 ISSB는 2022년 11월 3일 회의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관련 공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지침의 출처를 논의하고 지침의 출처는 공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초안)의 50~54항에서 설명
- ISSB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관련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이외의 자료에서 지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S1 초안의 문단 50~54에 있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수정하여 확인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으며 특히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특별히 적용되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 없는 경우 공시할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53항에서 제안된 요건을 확인
 - b. 단락 51(a) 및 54에서 제안된 SASB 표준을 고려하는 요건을 확인
 - c. 단락 51(b) 및 54를 수정하여 작성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해당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준비할 때 CDSB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명시
- 13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S1 초안의 기본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추가 분석 및 권장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는 개방형 투자자 중심 자료를 참조하는 지침 자료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tandards 및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를 잠재적으로 참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

○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2년 11월 1일에 회의에서 공개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의 제안을 계속해서 재심의
- ISSB는 기업이 기후 관련 변화, 개발 및 불확실성에 대한 회복력을 공시하는 제안된 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피드백을 고려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기업이 기업의 상황에 상응하는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ISSB는 기업이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수행
 - b. 15항에서 회복력을 평가하는 '대체 방법'에 대한 언급을 삭제
 - c. 기후 관련 TCFD의 지침을 기반으로 15항에 대한 적용 지침을 개발
 - d.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기후 회복력이 전략적 및 운영적 회복력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S2 초안 부록 A의 '기후 회복력' 정의를 수정
 - e. 기업이 매년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단 15에 설명된 기후 회복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함을 명확히 함
 - f. '분석'이 기업이 기후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시나리오 분석)를 설명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락 15의 용어를 수정하고 또한 해당 단락의 '평가'는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기후 회복력을 평가할 때 기업의 목적을 설명함을 분명히 함
 - g. 기업이 기후 회복력에 대한 공개를 평가하고 준비하기 위한 관련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3자 자료에 기반한 지침의 개발을 탐색
- 13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S2 초안의 제안을 계속해서 재심의 예정

9. ISSB Update on 10/18~21/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및 산업기반 자료(의제 문서 6)
 - ISSB는 2022년 10월 18~21일 회의에서 다음을 논의
 - 공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건(S1 초안)을 재심의할 계획(의제 문서 3A)
 - S1 초안의 목적과 일부 제안된 요건 및 정의된 용어(의제 문서 3B)
 - S1 초안 및 공개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에서 ISSB가 제안한 글로벌 기준선과 국가별 요건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핵심 사항(의제 문서 3C 및 4D)
 - 기업이 범위 1, 범위 2 및 범위 3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초안 S2의 제안(의제 문서 4A~4C)
 - 산업기반 자료를 작업 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권장 사항 및 초안 계획(Agenda Paper 6)
- 재심의 계획 업데이트(Agenda Paper 3A)
 - ISSB는 잠정적으로 재심의 계획에 한 가지 주제를 더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주제는 기업이 기업의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반영하는 비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S1 초안의 제안과 관련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기본 개념(의제 문서 3B)
 - ISSB는 S1 초안의 목적과 제안된 요건 및 정의된 용어 중 일부를 재심의했으며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에 동의
 - a. S1 초안의 목적은 기업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b. S1 초안의 '중요한(Material)'은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정의를 공유
 - c. S1 초안에서 제안된 '가치 사슬' 및 '보고 주체'의 정의는 변경되지 않음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S1 초안을 개정하여 중요성(Materiality)의 목적과 기술에서 '기업가치'의 정의와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향후 회의에서 '기업가치'의 의미에 대한 재심의를 지속할 계획(특히, 용어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재무정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 b.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제안된 요건에서 '의미 있는(Significant)'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주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려고 작성자가 사용하는 중요성 및 프로세스의 적용을 계속해서 재심의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상호 운용성 - 핵심 사항(의제 문서 3C 및 4D)

- ISSB는 S1 초안 및 S2 초안에서 ISSB가 제안한 글로벌 기준선과 국가별 요건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주요 문제를 논의
- ISSB는 다음을 잠정적으로 확인
 - a. S1 초안 및 S2 초안에서 제안된 공시 요건의 핵심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TCFD에서 설명한 4개의 주축(Pillar)을 사용하는 것 즉, 거버넌스; 전략; 위기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
 - b. 글로벌 베이스라인의 의미 - 특히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제안된 공시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대출 기관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 해당 공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중요성 평가 대상; 해당 공시 정보는 국가별 특정 규제 요건과 같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된 정보와 함께 표시될 수 있지만 해당 추가 정보로 인해 가려질 수는 없음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S1 초안의 제안된 요건과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제안된 공시 요건의 목적이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임을 확인(의제 문서 3B 참조)
 - b. S1 초안에 포함된 '기업 가치'의 정의를 삭제하고 초안 S1 목표 및 중요성 설명에서 '기업 가치 평가'라는 단어를 삭제(의제 문서 3B 참조)

- c. S1 초안 및 S2 초안과 일관되게 단기, 중기 및 장기 시간 범위가 정의되지 않았음을 확인
- d. S1 초안에서 제안된 '가치 사슬'의 정의를 확인(의제 문서 3B 참조)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현재 영향에 대한 초안 S2의 제안된 요건과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을 확인하기로 결정
 - a. S2 초안의 문단 14는 기업이 보고 기간 동안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즉, 현재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b. S2 초안의 문단 21(b)~(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및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해 별도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음
 - c. S2 초안의 단락 21(b)~(d)에 명시된 지표 형식으로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가 있는 자산에 대한 별도의 공시 요건
- S2 초안의 다른 제안된 요건과 관련하여 ISSB는 온실가스 배출, 기후 회복력 및 배출 목표에 대한 임시 결정도 내림
-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제안된 완화를 만족하면서 GHG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GHG 프로토콜 표준)의 사용을 확인(의제 문서 4C 참조)
 - b. 실행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완화 조치를 만족하는 Scope 3 배출량 공개 요건을 확인(의제 문서 4B 참조)
 - c. Scope 3 GHG 배출량의 세분성(범주 수)을 확인하기 위해, 특히 기업이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서 15개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의제 문서 4B 참조)
- 기후 회복력과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기업에 기후 회복력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해당 단락에 명시된 특정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S2 초안의 단락 15(a)를 확인
 - b. 기업에 기후 회복력 분석을 수행한 방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S2 초안의 단락 15(b)를 확인

- c. 기업에 시나리오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S2 초안의 단락 15(b)(i)(4)를 확인하며 다음 사항도 확인
 -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예: 파리 협정)에 대한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기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 또는 1.5°C 시나리오와 관련된 특정 시나리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
- d. 기업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을 알리기 위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
- 배출량 목표와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탄소 배출권의 의도된 사용을 공시하는 제안된 요건을 확인하면서, 기업의 순 배출 목표(들) 및 탄소 배출권의 의도된 사용은 기업의 총 배출 감소 목표(들)와 별도로 공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b. 전환 계획에서 배출량을 상쇄하는 맥락에서 S2 초안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 c. 다양한 유형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특히 제안된 요건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측면을 다루기 위해 기업이 설정(S2 초안의 단락 13(a))한 기후 관련 목표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배출 목표의 역할(S2 초안의 단락 13(b))
 - d. 기업이 설정한 배출 목표(순 배출 목표 및 총 배출 감소 목표 모두)와 현지 법률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배출 목표를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모든 결정에 동의

○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의제 문서 4A)

- ISSB는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량을 공개하기 위한 기업의 제안에 대해 논의
- ISSB는 기업이 다음을 공개하도록 제안된 요건을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 a.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량에 대해 보고 기간 동안 생성된 CO2 환산 미터톤으로 표시된 절대 총 GHG 배출량
 - b. 연결되지 않은 피투자자(즉, S2 초안의 단락 21(a)(iii)(1)에 포함되지 않은 연결

되지 않은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량을 포함하는 데 사용한 접근 방식

- c. S2 초안의 문단 21(a)(iv)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접근법 선택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S2 초안의 문단 19에 있는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 또한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리된 개별적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기 위해 제안된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 a. 연결 회계 그룹(즉, 법인의 모기업 및 자회사)
 - b. 연결되지 않은 피투자자
 - 참석한 11명의 ISSB 회원 모두 이러한 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원 1명이 불참

○ 범위 3 온실가스 배출(의제 문서 4B)

- ISSB는 기업이 범위 3 GHG 배출량을 공개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의견수렴에서 응답자가 제기한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품질 문제를 완화하는 구체책에 따라 기업이 Scope 3 GHG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유지
 - b. 해당 공시에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설명된 15개의 Scope 3 GHG 배출 범주 중 어느 것이 기관의 Scope 3 배출량 측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지 확인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ISSB는 또한 Scope 3 GHG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품질 문제에 대해 응답자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ISSB는 다음을 고려
 - a. Scope 3 GHG 배출에 대한 공시에 시행일을 연기하여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된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
 - b.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 감독 기관과 협력하여 과도기적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
 - c. Scope 3 GHG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위한 시행 지침을 개발하여 제안된 요건을 적용하는 작성자를 지원 -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

- d. 데이터 품질 서열을 도입하도록 제안된 요건 수정 - 기업의 기본 데이터에서 제시된 품질 수준을 차별화하여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
- e. Scope 3 GHG 배출 공시의 '범위'를 재평가해야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제안된 요건을 적용하는 작성자를 지원
- f. 가치 사슬 기업의 보고 주기가 서로 맞지 않거나 작성자의 주기와 일치하지 않을 때 작성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하여 작성자가 제안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Agenda Paper 4C)

- ISSB는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라 Scope 1, Scope 2 및 Scope 3 GHG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 논의
- ISSB는 잠정적으로 제안된 요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의견수렴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수정하기로도 결정했으며 이러한 수정 사항은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에도 적용(이 업데이트에서는 두 가지 측정 방법을 통칭하여 GHG 프로토콜 표준으로 부름)
- 구체적으로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 a.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구체책에 따라 GHG 프로토콜 표준의 적용이 요구되도록 제안을 수정
 - b. 기업은 S2 초안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된 날짜(2022년 3월 31일)에 시행 중인 GHG 프로토콜 표준 버전을 적용해야 함을 지정함에 따라서 GHG 프로토콜 기업 표준의 경우 2004년 버전이고 GHG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범위 3) 회계 및 보고 표준의 경우 2011년 버전임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산업기반 자료(의제 문서 6)

- ISSB는 다음을 포함하여 산업기반 자료와 관련하여 내릴 결정에 대해 논의
 - a. S1 초안에서 SASB 표준의 역할
 - b. S2 초안에 대한 부록 B의 산업기반 요건
 - c. SASB 표준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기후 관련 표준을 넘어)

- S2 초안의 부록 B에 명시된 산업기반 요건과 관련하여 ISSB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
 - a. 기업이 산업별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
- 부록 B의 내용을 예시로 분류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부록 B를 의무화 하겠다는 의도를 밝힘
 - 12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향후 회의에서 ISSB는 다음을 계속
 - a. S1 초안 및 S2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
 - b. 프로젝트 제안을 재심의
 - c. S1 초안과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해 제안된 공시를 재심의
 - d. S2 초안과 관련된 GHG 배출에 대해 제안된 공개를 재심의

○ 의제 우선순위 협의(Agenda Paper 2)

- ISSB는 2022년 10월 18일 만나 의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요청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된 접근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논의했고 정보 요청은 ISSB의 2개년 작업 계획의 개발을 알림
- ISSB는 잠정적으로 정보 요청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결정
 - a. IFRS S1 및 IFRS S2에 의해 확립된 기초 위에 구축하기 위한 작업의 개요를 작성하고(기초 작업), 새로운 연구 및 표준 설정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만 요청
 - b. ISSB가 공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초안 및 공개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 및 ISSB의 초기 작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관련 활동의 중요한 영역을 먼저 결정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에 게시
- ISSB는 또한 기초 작업이 다음을 포함하는 Agenda Paper 2의 단락 12, a.~d.에 설명된 활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
 - a. SASB 표준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레거시 SASB 표준 프로젝트를 지속

- b. 디지털 보고를 위한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Taxonomy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핵심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
 - c.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IASB 및 기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설정 기관과 조정
 - d. 일단 확정되면, S2 초안의 목표 개선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확산 활동
- 12명 ISSB 회원 모두는 위의 d.항에 명시된 기본 작업에 대한 결정을 제외하고 이러한 모든 결정에 동의했으며 12명의 ISSB 회원 중 11명이 그 결정에 동의

○ 다음 단계

- ISSB는 정보 요청에 포함할 새로운 연구 및 표준 설정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 연구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고려

10. ISSB Update on 9/20~23/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제 문서 3) 및 기후 관련 공시(의제 문서 4)

- ISSB는 2022년 9월 20~23일에 회의 개최
 - 공개 초안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S1 초안) 및 공개 초안 IFRS S2 기후 관련 공시(S2 초안)에 대한 의견 요약을 논의
 - S1 초안 및 S2 초안을 재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계획을 논의
 - S1 초안 및 S2 초안의 제안을 수정하여 수용능력과 준비상태가 차이 나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제안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업의 잠재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부름
 - S2 초안의 금융 및 촉진 배출 제안에 대한 피드백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당 피드백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예비 제안 접근 방식을 논의

○ 의견 요약(의제 문서 3A 및 4A)

- ISSB는 의견서와 S1 초안 및 S2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된 피드백에 대해 논의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재심의 계획(의제 문서 3B 및 4B)

- ISSB는 S1 초안 및 S2 초안을 어떻게 재심의해야 하는지 논의했으며 특히 IS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재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재심을 위한 특정 주제 그리고 프로젝트의 타이밍
- ISSB는 S1 초안 및 S2 초안의 재심의 주제를 잠정적으로 결정
 - a. 확장성
 - b. 기업의 재무 성과, 재무 상태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및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현재 및 예상 효과
- ISSB는 S1 초안의 재심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
 - a. 기업 가치
 - b. 필요한 보고 범위
 - c.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
 - d.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및 공개 식별(다른 표준 설정자의 자료 사용 포함)
 - e. 중요성 평가 적용
 - f. 연결된 정보
 - g. 보고 빈도
- ISSB는 S2 초안의 재심의 주제를 잠정적으로 결정
 - a. 전환 계획을 포함한 전략 및 의사 결정
 - b. 기후 회복력
 - c. 온실가스 배출
 - d. 자금 조달 및 배출 축진을 포함한 산업기반 요구사항
- 10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동의

○ 확장성(의제 문서 3C 및 4C)

- ISSB는 S1 초안 및 S2 초안의 제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 기업의 능력 범위와 준비상태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ISSB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장성'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라 부르고 ISSB는 어떤 확장성 메커니즘이 식별된 모든 확장성 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요인을 고려
 - ISSB는 관련된 경우, 공시 요건을 확장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식별되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으며 특히 ISSB는 다음 사항을 고려
 - a. 확장성과 관련된 특정 기준에 따라 기업이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또는 적용하기 더 간단한 대체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도록) 제안된 공시 요건을 수정
 - b. 공시를 제공할 수 없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제안된 공시 요건을 수정
 - c. 적용을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ISSB를 포함하여 작성자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 d.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토콜 참조, 심층적 지침을 위한 자료로서 프레임워크 및 지침, 적용을 지원하는 측정 방법 및 계산 입력을 포함하여 작성자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
 - 전환 기간 동안 관할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및 '고급'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기업별로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화하기 위해 제안된 공시 요건을 수정
 - ISSB는 어떤 확장성 메커니즘이 특정 확장성 문제 대응에 적합한 지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잠정적으로 결정
 - a. 확장성 문제가 일시적인지(즉, 과도기적 문제) 아니면 더 영구적인지(예: 데이터 가용성 문제)
 - b. 확장성 문제가 있는 기업 집합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
 - c. 이용가능한 시장 지침, 방법, 산업 관행 및 기법의 범위
 - d. 공시 요건을 뒷받침하는 기본 방법 및 기술의 성숙도
- 10명의 ISSB 회원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

- 금융 및 촉진 배출(Agenda Paper 4D)
 - ISSB는 S2 초안의 금융 및 촉진 배출 제안에 대한 피드백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당 피드백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예비적으로 제안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다음 단계
 - 향후 회의에서 ISSB는 다음을 수행
 - a. S1 초안 및 초안S2에 대한 피드백 논의 계속
 - b. 프로젝트 제안을 재심의회하기 시작
 - c. 특정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메커니즘을 결정
 - d. 금융 및 촉진 배출의 제안된 공시에 대한 재심의를 계속
- 전략 및 거버넌스
- IASB 업데이트(의제 문서 5)
 - IASB 의장 Andreas Barckow는 IASB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발표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11. ISSB Update on 7/21/2022

-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개 및 기후 관련 공개(의제 문서 2)
 - ISSB는 공개 초안, IFRS S1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건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회의에서 수집된 예비 피드백 요약 검토하기 위해 2022년 7월 21일 회의 개최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다음 단계
 - ISSB는 의견서, 설문조사 응답, 시장 참여 활동 및 공개된 이해관계자와의 기타

회의에서 얻은 피드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7월 29일에 종료

○ 전략 및 거버넌스

○ 의제 우선순위 협의(의제 문서 1)

- ISSB는 2022년 7월 20일에 만나 의제 우선순위에 대해 대중과 협의하기 위한 정보 요청을 준비하는 접근 방식을 논의했으며 정보 요청은 ISSB의 2개년 작업 계획의 개발을 알림
- ISSB는 다음과 같이 논의
 - 이미 완료된 단계와 예상되는 다음 단계를 포함하여 정보 요청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
 - ISSB 활동의 전략적 균형
 - 작업 계획에 포함될 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정보요청서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의제 문서 1A)

- ISSB는 의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얻기 위해 정보 요청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해 논의했으며 ISSB는 다음과 같은 예비 목록을 논의
 - a. 광범위하게 정의된 주제
 - b. 산업기반 요구사항 및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 c.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협력하여 수행할 잠재적인 프로젝트
- ISSB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지 않음

○ 다음 단계

- ISSB는 정보 요청에 포함할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 연구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고려할 것이며 정보 요청은 2022년 하반기에 게시될 예정

〈부록 표 1〉 ISSB 지속가능공시 초안의 쟁점 사항

논의 시기	공시 부문	의견 및 질문	ISSB의 답변
'22. 10	S1	IFRS S1의 주 목적을 '기업가치' 평가로 제한 시, 공시정보 범위 축소될 수 있음	'기업가치' 용어 삭제
	S1	단어 '유의적인(Significant)'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동 단어와 '중요한(Material)'의 차이가 모호함	'유의적인' 용어 삭제
	S1	가치사슬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종속기업과 보고기업이 인식하는 위험과 기회가 상이할 수 있음	보고범위에 종속기업과 가치사슬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해당 보고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
	S2	Scope 1, 2에 해당하는 비연결기업(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는 방식(통제력 기준 vs. 출자지분 기준)	연결기업(보고기업, 종속기업)과 비연결기업(관계기업, 공동기업)의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추가지침을 개발할 예정
	S2	데이터 부족 등 Scope 3 공시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Scope 3 관련 공급업체, 고객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시기가 보고기업의 공시 시기와 다를 경우 정보를 가져오기 어려움	Scope 3 공시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반면 해당 공시의 필요성에 이사회 전원 동의 다만 Scope 3 시행일 연기와 회피조항(Safe harbor) 도입은 지지 ¹⁾
'22. 11	-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와 기회가 당기 및 미래에 재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시하기 모호함	공시정보에 대한 예시 지침(Illustrative examples)을 제공할 예정
	-	전기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갱신되는 경우 재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갱신된 추정치를 반영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해야 함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는 것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동시보고는 유지, 재무제표 발행 후 일정 기간에 한하여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과규정 도입 논의 중
	S2	IFRS S2의 문단 13 '전략과 의사결정' 및 문단 23 '기후 관련 목표' 의미가 모호함	각종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 지침을 제공하여 혼란 최소화 예정

〈부록 표 1〉 계속

논의 시기	공시 부문	의견 및 질문	ISSB의 답변
'22. 12	S1	IFRS S1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인지 모호함	기업이 투자자 등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 환경 및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와 연결되는지 설명할 예정
	S1	실무지침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때 고려 요소와 프로세스 정보의 주요 이용자와 그들의 결정, 기업의 특정 상황을 고려한 판단, 불확실성 하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SASB 기준(업종별 기준) 활용법 등
	S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유의점	Scope 1, 2, 3 항목별 온실가스 집약도 배출량 구분 공시 제외
	S2	Scope 3 배출량 공시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2 시행일 이후 1년간 Scope 3 공시 면제 일시적 적용 가치사슬 내 기업의 보고 기간이 상이한 경우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 영향 조정 Scope 3 배출량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
	S2	Scope 3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s) 관련 공시 대상 여부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은 Scope 3 금융 배출과 관련하여 공시해야 함(파생상품 제외)
	S1	재무 데이터 및 가정의 차이점에 대한 공시 여부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용 재무 데이터 및 가정,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공시해야 함
'23. 1	S1, S2	기업 S1, S2 핵심 항목 중 '지표 및 목표'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기업이 사용하는 지표가 ISSB S1, S2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공시 ISSB S1, S2가 요구하지만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지표의 경우에도 기업은 이에 대해 공시
	S1	판단, 가정 및 추정에 대한 공시 유의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판단을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도입할 예정
	S1	S1 문단 79에서 언급한 '추정의 불확실성(Measurement uncertainty)'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의 불확실성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 기업의 당기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금액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조정될 수 있는 위험도 이에 포함

〈부록 표 1〉 계속

논의 시기	공시 부문	의견 및 질문	ISSB의 답변
'23. 1	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1 문단 80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possible)의 의미 • 재무 데이터 및 가정의 차이점에 대한 공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회계기준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사항을 고려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를 의미 •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용 재무 데이터 및 가정,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공시해야 함
	S1	기회(Opportunities)와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 S1이 요구하는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하여 보고기업의 경쟁 우위나 경제적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시를 면제하는 면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결정 • 다만 보고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제표 보고일에 해당 민감 정보가 여전히 면제 여부인지 재평가해야 함
	S1, S2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현재 그리고 미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된 정보에 대한 공시 사항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현재 및 미래의 기업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적,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S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기후 탄력성 평가와 해당 공시의 내용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된 정도,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보고기업의 사용 기술, 능력 및 자원에 대해 공시
	S2	비연결기업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시점이 상이한 경우	보고기업은 보고 시점이 상이한 비연결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양 기업의 보고 기간은 동일해야 함
'23. 2	S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시, 타 이니셔티브(GRI, ESRS 등) 참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시 IFRS S1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GRI, ESRS 등 타 이니셔티브나 표준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	IFRS S1, S2의 발효시점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23. 4	-	기후 관련 정보(S1, S2)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도입 시기	전환기 완화(Transition reliefs) 방안을 적용, '24년 회계연도에 보고기업은 S1, S2에 따른 공시를 하고 그 외(S3, S4 등)사항은 다음 해부터 공시

주: 최종안에 따라 IFRS S2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 번째 보고 기간(First annual reporting period) 동안 직전 지속가능 보고에 사용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은 Scope 3 및 금융 배출량을 공시하지 않아도 됨

자료: IFRS(2023)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이승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이승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sj_lee@kiri.or.kr

연구보고서 2023-08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17-0
979-11-85691-50-0(세트)

(정가 10,000원)